



# NABO 재정동향&이슈

## NABO Fiscal Trends & Issues

### CONTENTS

####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동향&이슈 |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발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외 11건

#### 해외재정동향

| 미국, 2024회계연도 잠정예산 발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일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CONTENTS

### 주요 재정지표 / 3

총수입·총지출 / 4

재정수지 / 5

국가채무 / 6

###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9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발표 / 10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14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 18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 22

병 복지 관련 예산 현황 / 27

방위산업 수출 및 금융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 3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 36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발표 / 40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 추진 / 45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 / 48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 51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 발표 / 55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이슈 / 59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65

### 해외재정동향 / 71

미국, 2024회계연도 잠정예산 발표 / 72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74

일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77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재정지표

---

- ▼ 총수입·총지출
- ▼ 재정수지
- ▼ 국가채무



## 총수입·총지출

2023년도 10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 감소한 492.5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9.6%p 감소한 78.7%

- 총수입의 감소는 전년동기 대비 기금수입은 8.0조원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각각 50.4조원, 2.7조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10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7.8조원 감소한 502.9조원이고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6.7%p 감소한 78.7%

- 총지출의 감소는 일반회계 및 기금 지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전년동기 대비 일반회계 지출은 37.7조원 감소, 기금 지출은 39.2조원 감소

### 2022·2023 회계연도 총수입·총지출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2023(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10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10월 (당월)	10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	609.1	617.8	537.6	88.3	625.7	56.1	492.5	78.7	△45.2	△9.6
• 국세수입	396.6	395.9	355.6	89.7	400.5	38.6	305.2	76.2	△50.4	△13.4
• 세외수입	28.3	30.8	25.3	89.4	25.0	1.8	22.6	90.6	△2.7	1.2
• 기금수입	184.1	190.8	156.5	85.0	200.3	15.8	164.5	82.2	8.0	△2.9
(사회보장성기금) <sup>1)</sup>	104.8	119.0	99.0	94.4	114.6	8.2	102.5	89.4	3.5	△5.1
◆ 총지출	679.5	682.4	580.7	85.5	638.7	35.4	502.9	78.7	△77.8	△6.7
• 예산	449.8	439.6	372.1	82.7	441.1	24.1	343.9	78.0	△28.2	△4.8
- 일반회계	388.2	379.9	322.2	83.0	369.4	20.5	284.6	77.0	△37.7	△6.0
- 특별회계	61.6	59.7	49.9	81.0	71.6	3.6	59.4	82.9	9.5	1.9
• 기금	229.7	231.2	197.3	85.9	197.7	11.3	158.2	80.0	△39.2	△5.9
(사회보장성기금)	64.4	66.5	55.7	86.5	69.5	5.9	60.7	87.3	4.9	0.8
• 세입세출외	-	11.6	11.2	-	-	0.1	0.8	-	△10.5	-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2023. 12.)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성



# 재정수지

2023년도 10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32.6조원 개선되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34.1조원 개선

-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5.2조원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등으로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77.8조원)하여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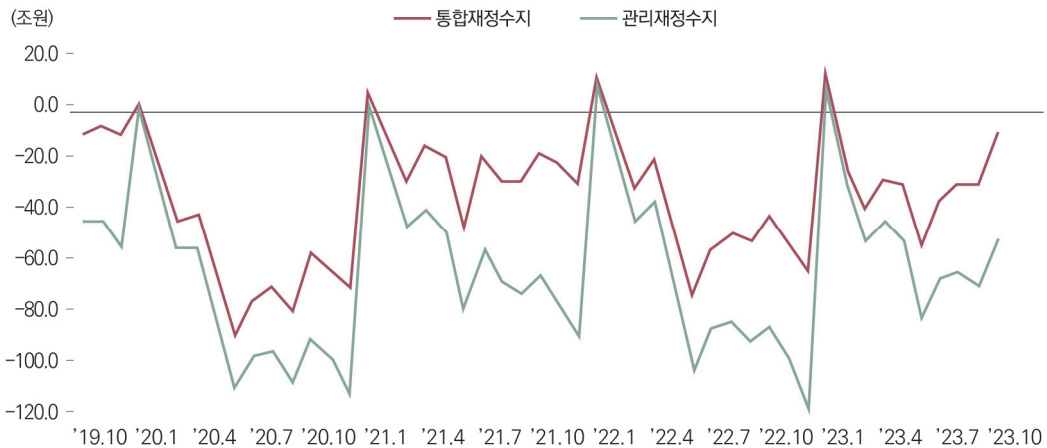
## 2022·2023 회계연도 재정수지 실적

(단위: 조원, %, %p)

구 분	2022				2023(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10월 (누계, B)	진도율 (C=B/A)	본예산 (D)	10월 (당월)	10월 (누계, E)	진도율 (F=E/D)	누계 (E-B)	진도율 (F-C)
◆ 총수입(A)	609.1	617.8	537.6	88.3	625.7	56.1	492.5	78.7	△45.2	△9.6
◆ 총지출(B)	679.5	682.4	580.7	85.5	638.7	35.4	502.9	78.7	△77.8	△6.7
◆ 통합재정수지(C=A-B)	△70.4	△64.6	△43.1	-	△13.1	20.7	△10.4	-	32.6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D)	40.4	52.5	43.3	-	45.1	2.3	41.8	-	△1.5	-
◆ 관리재정수지(E=C-D)	△110.8	△117.0	△86.3	-	△58.2	18.4	△52.2	-	34.1	-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2023. 12.)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2023. 12.)

# 국가채무

2023년도 10월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1,105.5조원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 1,033.4조원 대비 72.1조원 증가

-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sup>1)</sup>은 2022년 47.8%로, 2021년 45.1% 대비 2.7%p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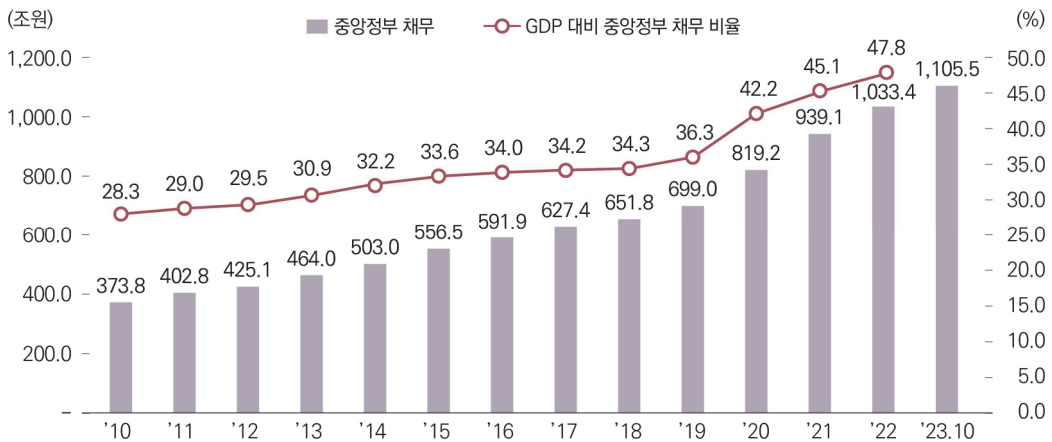
## 2021~2023년도 중앙정부 채무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잠정)		
	결산	결산(A)	본예산	10월(B)	전년 결산 대비(B-A)
◆ 중앙정부 채무	939.1	1,033.4	1,101.7	1,105.5	72.1
• 국채 <sup>1)</sup>	937.0	1,031.5	1,100.3	1,104.2	72.7
- 국고채권	843.7	937.5	999.0	1,011.6	74.0
- 국민주택채권	82.2	82.2	86.8	80.8	△1.4
- 외평채권(외화)	11.2	11.8	14.5	11.9	0.1
• 차입금	2.0	1.9	1.2	1.3	△0.6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2	0.1	-

주: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이 포함됨  
 자료: 기획재정부

## 중앙정부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 2023년의 경우, GDP가 확정되지 않아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2022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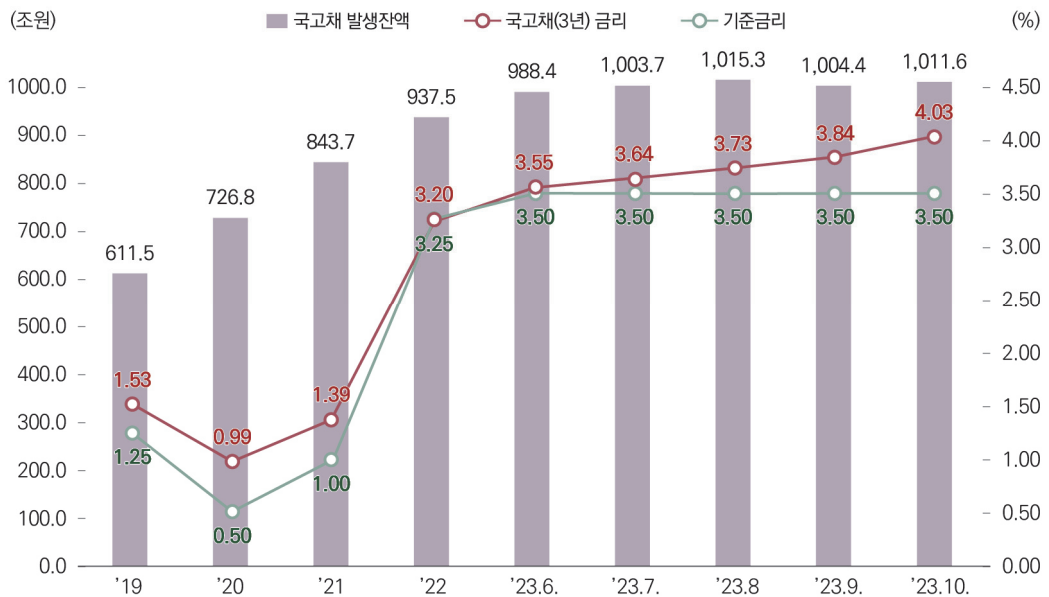




## 2023년도 10월말 기준 국고채 발행잔액 규모는 1,011.6조원으로, 2022년말 937.5조원 대비 74.1조원 증가

- 국고채 금리(3년 만기 기준)는 2020년 최하점(0.99%)을 기록한 후,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0월 기준 4.24%까지 상승하였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023년 6월 기준 3.55%를 나타냈으며, 미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전망 등에 따라 2023년 10월 기준 4.03%까지 반등
- 기준금리는 2020년 기준 0.50%로 최하점을 기록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3년도 1월까지 3.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2월부터 10월말 기준까지 3.5%로 동결 유지

국고채 발행잔액, 국고채(3년) 금리 및 기준금리 변동 추이



주: 1. 국고채 발행잔액은 국고채 총 발행액 중 총 상환액을 제한 금액으로, 기간별 순발행 금액의 누적 합계를 의미함

2. 국고채 금리 및 기준금리는 해당 기간 중 평균금리를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주요 재정동향 & 이슈

- ▶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발표
-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 ▶ 병 복지 관련 예산 현황
- ▶ 방위산업 수출 및 금융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발표
- ▶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
-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 ▶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 발표(2023.9.)
-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이슈
- ▶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발표

## 기획재정부,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2023. 12. 14.)

- 정부는 일반정부·공공부문의 부채 관리를 위해 국제기준(PSDS)에 따라<sup>1)</sup> 부채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및 중앙·지방의 346개 비영리공공기관<sup>2)</sup>을 포함하여 작성되며, 국제 비교에 주로 활용됨
  - 공공부문 부채(D3)는 일반정부 부채(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여 작성

### 부채 유형

유형	2022년 규모 (GDP대비)	포괄 범위	산출 기준	활 용
국가채무 (D1)	1,067.4조원 (49.4%)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1,157.2조원 (53.5%)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기준(PSDS),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588.7조원 (73.5%)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기준(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1)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국제비교가 가능한 신뢰성있는 채무정보 산출을 위해 IMF, OECD 등이 공동 제정(12년)한 부채 통계 작성 지침서  
 2) 공공기관 중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 ÷ 판매액)이 80% 이상인 경우 비영리공공 기관으로 분류



## 2022년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1,157.2조원으로, GDP 대비 53.5% 수준

- 2022년 일반정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로,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함
  - 전년(1,066.2조원) 대비 90.9조원, GDP 대비 비율 2.2%p 증가
  - 국고채 증가(84.3조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 증가(88.9조원)가 일반정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임

### 일반정부 부채(D2)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년(A)		2022년(B)		증감(B-A)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일반정부 부채(=①+②+③)	1,066.2	51.3	1,157.2	53.5	90.9	2.2
■ 중앙정부(①)	1,016.2	48.8	1,104.2	51.1	88.1	2.3
- 회계·기금	975.7	46.9	1,064.6	49.2	88.9	2.3
- 비영리공공기관	54.3	2.6	55.0	2.5	0.7	△0.1
- 내부거래	△13.9	△0.7	△15.4	△0.7	△1.5	0.0
■ 지방정부(②)	69.9	3.4	72.8	3.4	2.9	0.0
■ 내부거래(③)	△19.8	△1.0	△19.8	△0.9	0.0	0.1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2년에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가 2022년에도 유지됨
  -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 증감(%p): (2018) △0.1 (2019) 2.1 (2020) 6.6 (2021) 2.6 (2022) 2.2

연도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759.7	40.0	810.7	42.1	945.1	48.7	1,066.2	51.3	1,157.2	53.5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국가별 일반정부 부채(D2) 추이

(단위: GDP 대비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프랑스	97.8	97.4	114.7	113.0	111.8
독일	61.9	59.5	68.7	69.0	66.1
일본	232.4	236.4	258.6	255.1	260.1
한국	40.0	42.1	48.7	51.3	53.5
영국	85.2	84.5	104.6	105.2	101.9
미국	107.4	108.7	133.5	126.4	121.3

주. 1) 2023.10월 IMF fiscal monitor에는 전망치(53.8%) 기재, 2022년 일반정부 부채 확정치(53.5%)는 '24.4월호부터 반영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2022년 공공부문 부채(D3) 규모는 1,588.7조원으로, GDP 대비 73.5% 수준

- 2022년 공공부문 부채(D3) 증가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 및 비금융 공기업 부채 증가에 기인하며,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도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함
  - 전년(1,427.3조원) 대비 161.4조원, GDP 대비 비율 4.9%p 증가
  - 공공부문 부채(D3)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일반정부 부채(90.9조원) 및 비금융공기업 부채(77.7조원) 증가임
  - 2022년의 경우 전년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가 규모(77.7조원)가 예년 수준을 상회하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46.2조원) 및 한국가스공사(17.1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6.5조원) 등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전년대비 77.9조원 증가) 증가 등에 기인함



### 공공부문 부채(D3) 총괄표

(단위: 조원, %, %p)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B-A)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 공공부문 부채(=①+②+③)	1,427.3	68.6	1,588.7	73.5	161.4	4.9
■ 일반정부(①)	1,066.2	51.3	1,157.2	53.5	90.9	2.2
■ 비금융공기업(②)	439.7	21.1	517.4	23.9	77.7	2.8
■ 내부거래(③)	△78.6	△3.8	△85.9	△4.0	△7.3	△0.2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2019년 이후 증가세를 유지함
  - 공공부문 부채 비율 증감(%p): (2018) △0.1 (2019) 2.1 (2020) 7.1 (2021) 2.6 (2022) 4.9
    - 공공부문 부채(D3)는 산출 국가가 8개국<sup>3)</sup>에 불과하여 국제 비교에 한계

###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및 세부내역

(단위: GDP 대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 공공부문 부채(D3)	1,078.0	56.8	1,132.6	58.9	1,280.0	66.0	1,427.3	68.6	1,588.7	73.5
■ 일반정부 부채(D2)	759.7	40.0	810.7	42.1	945.1	48.7	1,066.2	51.3	1,157.2	53.5
■ 비금융공기업	387.6	20.4	395.8	20.6	408.1	21.0	439.7	21.1	517.4	23.9
■ 내부거래	△69.3	△3.6	△73.9	△3.8	△73.3	△3.8	△78.6	△3.8	△85.9	△4.0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보도자료, 2023.12

예산분석총괄과 강지혜 예산분석관(02-6788-4626)

3) D3 산출 국가는 호주(2023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130.4%), 캐나다(2023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135.9%), 콜롬비아(자국화폐단위로만 산출), 코스타리카(2023년 3분기 기준 GDP 대비 73.4%), 한국, 멕시코(2023년 1분기 잠정치 기준 GDP 대비 52.6%), 슬로바키아(2023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66.7%), 영국(2023년 2분기 기준 GDP 대비 189.7%) 등 8개국임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2023. 8. 30.)

- 중소기업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2023.8.30.)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주체인 벤처·스타트업을 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하여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필요
- ※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는 나라
- (추진배경) 그동안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정부의 개선 노력으로 양적인 성장은 달성하였으나, 질적 고도화 필요
  -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와 신설법인 수는 2006년에 비해 2021~2022년 평균값이 각 20배(약 0.7조원 → 약 14조원) 및 2.4배(약 5만개 → 약 12만개) 이상으로 증가
  - 그러나 최근 대내외 경제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벤처투자는 다소 위축되었고, 특히 최근 2년(2021 ~ 2022년)간 비대면·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이 심화되어 질적 고도화 필요

##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5대전략 및 세부 과제) 비전인 “「스타트업 코리아」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 실현”을 위해 5대 전략 및 각종 세부과제 추진 예정

5대 전략	세부 과제
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 성장지원</li> <li>•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li> <li>• 외국인 창·취업 지원</li> <li>•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li> </ul>
② 민·관의 합동투자과 새로운 창업 지원 방식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 민간전환 촉진</li> <li>•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도입</li> <li>•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체계 마련</li> </ul>
③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 투자 환경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li> <li>• 지역기반 경쟁력 갖춘 스타트업 양성</li> <li>•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li> </ul>





5대 전략	세부 과제
④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과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타트업-대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li> <li>•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 도입</li> </ul>
⑤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인 창업 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전적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육</li> <li>•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 환경</li> <li>•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li> </ul>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 ● (전략1) 과감한 글로벌 도전(아웃바운드)과 글로벌 창업허브(인바운드) 조성

※ 아웃바운드(Out-Bound):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 인바운드(In-Bound): 해외 스타트업의 한국 창업생태계 정착 및 적응 지원 정책

#### - (아웃바운드 1) 쉬운 해외창업 및 해외에서 성장지원

- 한국인이 창업한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마련 등 성공적인 해외정착 지원
- 해외의 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투자받고 해외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틱스 사업을 신설(24, 20개사 목표)
-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모태펀드 자펀드인 글로벌 펀드를 2024년 10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하고, 신규 출자분야를 신설하여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

#### - (아웃바운드 2) 글로벌 정책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

- 기 지원받은 기업 중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Pool 구축 및 연계사업 우선 선정 등으로 지원 효율성과 해외 성공가능성 제고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화 및 청년 글로벌 창업교육 추진
- 부처별로 산재한 기업해외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한 「스타트업 통합DB」를 구축, 해외진출 지원사업 효율화

#### - (인바운드 1) 외국인 창·취업 지원

- 우수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창업하고 취업하기 용이하도록 외국인 창업·취업 비자 제도 개선
- 국내 및 아시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는 「K-스카우터 프로젝트」 도입 (영국 GEP\* 벤치마킹)

\*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 역량을 보유한 해외 창업기업의 영국 본사 이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 유치 전략가인 딜메이커를 통해 비자·멘토링·네트워킹 등 종합 지원

- (인바운드 2) 국경과 공간을 초월한 창업환경 조성
    -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 VC 등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허브 조성(수도권 「스페이스 K」 구축)
    - 가상공간에서의 기업활동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상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 시범 추진
- \* K-startup과 Metavers(Meta+universe)의 합성어로서 스타트업의 가상공간이란 의미

● (전략2) 민·관의 합동투자과 새로운 창업지원방식의 도입

-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간(24~27년) 총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는 한편, 안정적 벤처투자를 위한 정부 모태펀드도 확충
- 정부 재정의 추가 부담 없이 기업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성공불방식, 융복합형 창업지원 방식 등)을 도입하여 창업사업 지원방식 다각화
- 사업권 투자, 지분전환계약 제도 등 도입을 위해 「소상공인법」<sup>1)</sup>을 개정하고, 민간투자자 선투자시 최대 5배까지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융자하는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체계 마련

● (전략3) 지역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벤처투자 환경 보완

-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하드웨어 조성) 창업기반시설 집중 구축 및 창업유관기관 이전을 통해 도심 내 핵심권역을 스타트업에 특화된 클러스터로 재구성
  - (소프트웨어 조성) 클러스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민간 주도 거버넌스 구축 및 스타트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시 지역 R&D·사업화, 인프라 등 우선 지원
-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 및 지역 엔젤투자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기반 벤처투자 활성화

1) 소상공인의 대다수가 非법인 개인사업자로 주식·출자 등의 투자방식 불가



● (전략4)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과 규제개선

- 스타트업-대기업간 개방형 혁신 촉진
  - 우수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들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수요(needs)에 부합하는 기업을 쌍방향 탐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팹리스 챌린지」와 같은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을 AI·미래모빌리티 등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
  - 딥테크 동종·이종간 기술교류·네트워킹 및 BM(Business Method) 개발 지원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과제(비수도권에 혁신특구 지정, '23下)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스타트업 분야별로 핵심규제 정보를 파악하여 증기부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규제정보 진단 체계를 구축

● (전략5)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인 창업분위기 조성

- 학생의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촉진
- 창업으로 연결되는 군복무 제도 및 대학·연구환경 조성
  -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를 참고하여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확대하고, 군복무와 연계된 창업준비를 지원하여 전역 후의 창업을 촉진
  - 신기술 분야를 선점할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인재들의 벤처기업 근무 기회 제공
- 컨설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심리치료 → 실패분석 → 사업화」까지 종합지원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재창업과 재도전이 용이한 환경 구축

## 추진 시 고려사항

- 동 대책에 따라 스타트업 코리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민간의 역할분담·조정 및 긴밀한 연계·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벤처·스타트업 지원 필요
-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민간 벤처 투자 및 글로벌 진출·유입이 활성화되도록 동 대책을 차질없이 준비·이행할 필요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2023. 8. 9.)

- 농림축산식품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
- (개념) '반려동물 연관산업'이란 사료·진료·장묘·용품·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을 의미
  - 펫푸드, 펫헬스케어(동물용의약품, 펫보험 등), 펫서비스(돌봄, 교육·훈련, 장묘 등), 펫테크(자동화·스마트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로 분류
- (추진 배경) 펫휴머니제이션<sup>1)</sup>,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반려동물 시장에 맞춰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도록 연관산업을 육성할 필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에 따른 반려동물 양육 증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ICT·BT 등이 융복합되며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부각
    - \* 1인 가구 수/고령인구 비율: 561만 가구/13.8%(‘17년) → 716만 가구/16.6%(‘21년)
    -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추정): 364만(17.9%)(‘12년) → 602만(25.4%)(‘22년)
    - \* 고용규모(‘21년, 고용부): 3.1만명(‘19년) → 4.6만명(‘25년) / 연평균 6.4% 증가
  -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글로벌 시장규모는 3,270억 달러인 반면, 국내 시장규모는 8조원으로 세계시장에서 규모(1.6%)가 저조한 상황
    - \*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3,270억달러(‘22년): 펫헬스케어 1,811억달러(48.8%), 펫푸드 1,233억달러(32.8%), 펫서비스 625억달러(16.8%), 펫테크 50억달러(1.3%)
    - \*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8조원(‘22년): 펫헬스케어 2.6조원(32.5%), 펫푸드 1.8조원(22.5%), 펫서비스 3.5조원(43.8%), 펫테크 0.1조원(1.3%)
-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① 4대 주력산업(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육성, ② 성장 인프라 구축, ③ 해외수출 산업화를 제시
  - (달성 목표) ① 국내시장 규모를 8조원(‘22년)→15조원(‘27년)으로 확대, ② 1,000억원 이상 가치를 가진 기업 수를 7개사(‘22년)→15개사(‘27년)로 육성, ③ 펫푸드 수출액은 1억 4,900만불(‘22년)→5억불(‘27년)로 증가시킬 계획

1) 펫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이란 반려동물(Pet)과 인간화(Humanization)가 합쳐진 용어로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비 전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글로벌 전략산업화
달성목표	① [시장 확대] 국내시장 규모: ('22) 8조원 → ('27) 15조원 ② [기업 육성] 기업가치 1,000억원+: ('22) 7개사 → ('27) 15개사 ③ [수출 강화] 펫푸드 수출액: ('22) 149백만불 → (→'27) 500백만불
3대 전략	세부 추진과제
① 4대 주력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펫푸드) 특화제도 마련 및 생산 기반 강화</li> <li>•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 투명성 제고 및 펫보험 활성화</li> <li>• (펫서비스) 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산 환경 조성</li> <li>• (펫테크) 스타트업 육성 및 데이터 생태계 조성</li> </ul>
② 성장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거점) 반려동물 실증 종합인프라 조성 및 운영</li> <li>• (벤처) 벤처 투자 및 자금지원 강화</li> <li>• (R&amp;D) 「핵심 기술+신분야」 연구개발 확대</li> </ul>
③ 해외 수출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부터 현지화까지 시장개척 지원 강화</li> <li>• 수출지원체계구축 및 수출 검역 해소</li> </ul>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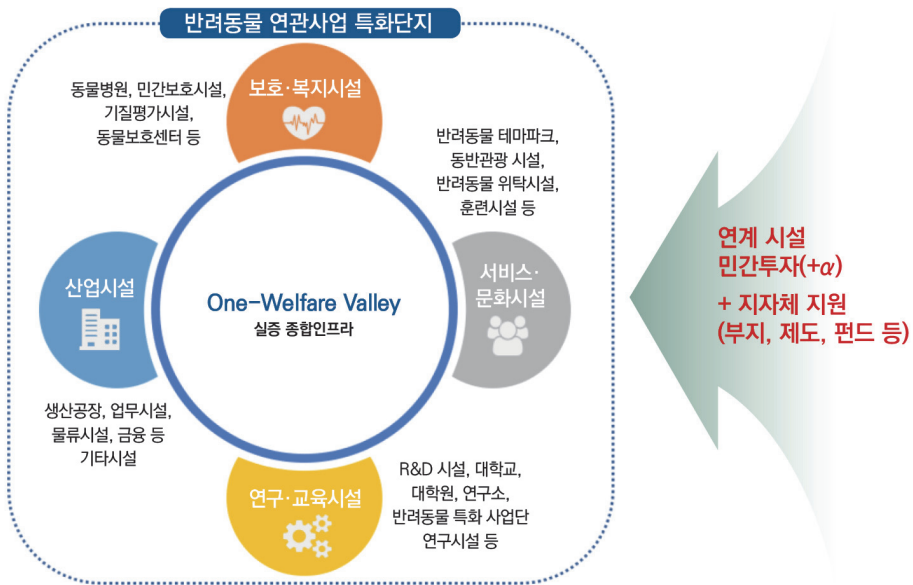
### ● (전략1) 4대 주력산업 육성

- (펫푸드)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펫푸드 원료확보를 위한 국내산 원료매입·시설자금 지원
  - ※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는 펫푸드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주식, 간식, 특수목적식)하며, 미국 정부는 이러한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제도화
- (펫헬스케어)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 면세 대상을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로 대폭 확대('23.10.1. 시행)하고, 펫보험 간편 청구 시스템 도입·확산
  - ※ 금융위원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23.10.16.) 및 농식품부-금융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23.11.19.)
- (펫서비스)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제 신설,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반려동물 친화 관광 지원, 동물장묘시설 입지 제한 규정 완화
- (펫테크)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하여 육성('24년~, 기업당 2억 8,000만원) 하고, 사업화 자금 및 판로 확대 등 전주기 지원

● (전략2) 성장 인프라 구축

- (혁신거점) 반려동물의 기호 등을 반영하여 제품·서비스의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실증인프라 시설인 One-Welfare Valley 조성
  - 실증테스트 시설: 실증 전용공간(생활 등), 실증결과 데이터 확보·분석 등을 위한 실증기관 연구 장비·시설 구축 및 운영
  - 양육·수의·훈련 시설: 반려동물 양육·수의 등 생활시설, 실증대상 표준화(식생활·배변·수면 등) 등을 위한 훈련시설 조성
  - 기업활용 시설: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컨설팅·공용시설 지원, 기업 R&D 실증센터 운영

One-Welfare Valley 개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 (벤처)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수 자펀드 신규 조성(24, 100억원) 및 저리용자를 통해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
- (R&D)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연관산업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



### ● (전략3) 해외 수출 산업화

- (시장개척) 베트남, 중국, 호주 등 유망시장 국가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함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자문·해외인증 등 제품·서비스 현지화를 지원
- (수출지원체계)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주기적으로 수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펫푸드 수출검역 위생조건 합의를 통한 수출 여건 조성

## 추진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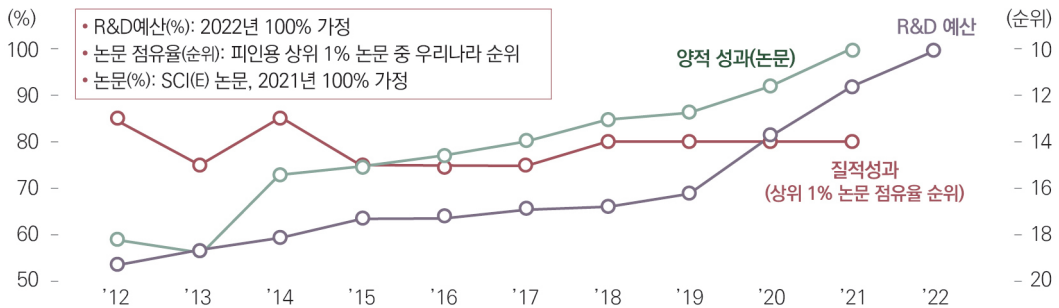
-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데이터를 수집할 필요
  - 펫푸드(「사료관리법」), 펫테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적용법률이 가축·사람 대상 기존 법령을 활용하고 있어 연관산업 육성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20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312.9만 가구(총가구 대비 15%)인 반면, 농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는 638.1만 가구(총가구 대비 27.7%)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 사육 및 연관산업 현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2023. 11. 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상정하였고, 심의·확정된 두 안건을 발표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제도·투자·국제협력의 3대 분야를 혁신할 계획
    - ‘R&D 혁신방안’에서는 ① 제도혁신과 ② 투자혁신 방안을 위한 16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고, ③ 국제협력 혁신은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통해 13개 세부과제로 구체화
  - 정부 R&D 투자 확대에 따라 SCI(E)<sup>1)</sup> 논문 수 등 양적 성과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피인용 상위 1% 논문 등 질적 수준은 정체 중
    - 정부는 그 원인을 지나친 공정성 중시, R&D예타 및 운영의 경직성, 양적 성장 중시, 소규모·파편화된 과제 수행, 전략 없는 국제협력 등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R&D 혁신방안을 마련
- ※ 정부 R&D SCI(E) 논문 수: (2012) 28,613편 → (2021) 48,381편(1.7배 증가)  
 ※ 피인용 상위 1% 논문: (2012) 15위 → (2021) 14위, 미국 대비 기술수준: (2012) 77.8% → (2021) 80.1%

## 최근 10년간 R&D 예산과 R&D 성과 추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p.1

1)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Expanded))으로 미국의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에서 과학기술 분야 학술 잡지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SCI(E) 등록 여부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평가기준이 됨





##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

- 두 안건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기초·원천기술 및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 세계 선도형 R&D 협력 및 글로벌 R&D 활성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혁신'의 3대 혁신 분야에 7개 추진전략과 29개 세부과제를 제시

### 정부 R&D 혁신방안의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구분	추진전략	세부과제
제도혁신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제도 도입</li> <li>• 연구자에게 성과 중심 인센티브 확대</li> <li>•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 단축(특례 도입)</li> <li>• 인력지도 활용, 잠재력 높고 탁월한 연구자 발굴</li> <li>• 연구지원 시스템 고도화, 관리조직 역량 강화</li> </ul>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적·도전적 R&amp;D 적기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li> <li>• 부처별 R&amp;D 예산 지출한도의 탄력있는 운영</li> <li>• 연구과제 연중 착수 등 유연한 예산 집행</li> <li>• 동일 기관 상피제 폐지 등 평가 전문성·투명성 제고</li> </ul>
투자혁신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연구에서 적정 규모 연구로 전환</li> <li>• 분산·파편화된 R&amp;D사업(1,200여개) 통합·재편</li> <li>• 국가전략기술 등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li> </ul>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과 협력 기반, 출연연 대전환</li> <li>•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li> <li>• 혁신성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별 지원</li> <li>• 젊은 과학자 성장 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li> </ul>
국제협력 혁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R&amp;D 투자 혁신 추진</li> <li>• 글로벌 R&amp;D 전략지도 수립</li> <li>•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li> <li>• 글로벌 R&amp;D 전략 거점센터 운영</li> <li>• 범부처 글로벌 R&amp;D 추진체계 강화</li> </ul>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li> <li>• 우수 재외한인연구자와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li> <li>• 젊은 과학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li> <li>• 기초연구의 글로벌 R&amp;D 지원 확대</li> </ul>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R&amp;D제도 혁신</li> <li>• 전략적 기술동맹을 위한 국가 간 협력채널 강화</li> <li>•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 강화</li> <li>• 글로벌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li> </ul>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 전략」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 **(전략1)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도입**

- (실패 용인 및 보상 강화)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에도 후속 과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연구자 기술료 보상 비율 상향(50%→60% 이상) 추진
- (연구시설·장비 조달 특례)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 기간 단축(약 120일→50일)이 가능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를 개정,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연구 시설장비 구매 추가
- (인력지도 활용 및 데이터 기반 혁신) 글로벌 인력지도 및 국내 연구자 DB를 활용하여 인력지도 구축하여 연구자 발굴·지원에 활용하고,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sup>2)</sup>)의 전면 적용 및 고도화 추진

● **(전략2) R&D에 맞지 않는 규제 혁파**

- (예타 개선 및 지출한도 탄력 운영) 혁신·도전 R&D의 적시 착수가 가능하도록 예타 면제를 적극 적용하고, 대안 제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부처별 지출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 편성
- (유연한 예산 집행) 연중 우수 연구과제 착수가 가능하도록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련 지침(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
- (상피제 폐지) 과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피평가자와 동일 기관 평가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제척기준(상피제)을 폐지하고, 연구과제 평가결과를 IRIS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 **(전략3)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 확대**

- (적정 연구비 지원 및 사업 대형화)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원)으로 확대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독려하고, R&D사업 일몰제로 파편화된 사업들의 통·폐합 추진
- (차세대 첨단기술 집중 투자)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확대하고, DARPA<sup>3)</sup> 방식의 고위험·고수익형 R&D 지속 발굴·확대

● **(전략4)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

-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 대학의 핵심 연구장비와 운영인력을 전폭 지원하고, 중점테마연구소·혁신연구센터 등 공동융합연구 및 연구거점을 확대하여 MIT 수준의 세계적 대학 육성
- (기업 선별 지원 및 젊은 과학자 지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딥테크 기업 및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고, 젊은 연구자의 초기연구실 구축과 국외연수 지원을 확대하며,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 추진
- (출연연 대전환) 출연연이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보장 및 집행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고, 전략기술과 관련된 출연연 사업을 ‘국가기술연구센터(NTC<sup>4)</sup>)’로 통합편성·관리

2)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는 부처별로 운영하던 과제지원·연구자정보·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것으로 2022년 1월 개통  
 3) DRA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는 미국 국방부 산하 R&D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으로, 파괴적 혁신기술에 대해 전략적·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NTC 도입 전·후 비교(예시: 수소기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p.14

● (전략5)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글로벌 R&D 투자 혁신) 소규모 국제협력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총 5.4조원+α를 투자하고, 회계연도 등 국가간 상이한 시스템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회계연도 이월 등 예산의 탄력적 운용 허용5)
- (R&D 전략지도 구축 및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관련 국내외 기술·연구기관·기업 현황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고, 관련 분야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R&D 투자 지원 강화
- (거점센터 운영 및 추진체계 강화) 글로벌 R&D 전주기 지원을 전담하는 ‘(가칭)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신설

● (전략6)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 및 재외한인연구자 활용) 국가전략기술별 최고 수준 연구자·연구기관을 분석·맵핑한 인력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협력에 활용하고, 재외한인연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연구자와 협업 기회 확대
- (젊은 과학자 글로벌 진출 및 기초연구 글로벌화) 초기 연구자의 글로벌 경험 기회 확대 및 국내외의 우수 연구자 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고, 개인·집단 기초연구의 글로벌화 추진

● (전략7)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생태계 조성

- (글로벌 R&D 제도 혁신)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연구 직접 참여, 글로벌 R&D 성과의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등을 담은 ‘글로벌 R&D 가이드라인’을 2024년 1분기 중 마련하여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R&D에 한하여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 규제(3책5공) 완화6) 추진

4) NTC(National Technology Center)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출연연 지원을 기존의 기관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안한 것으로, 2024년 이후 지정 예정

5) 이와 관련, 글로벌 R&D를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세출예산 이월 허용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김영식의원 대표발의)」이 2023년 9월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

- (기술 동맹 강화 및 글로벌 표준 선점)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 등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개발을 통해 리더십 확보
- (연구 보안 체계 내실화) 연구자·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전면 정비 및 보안과제 관리 내실화

## 추진 시 고려사항

-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총 29개 세부과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별 내용과 일정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 일례로 수의계약 가능 사유에 연구 시설장비 구매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일정 미정), 글로벌 R&D에 한하여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024년초 예정) 등은 실제 현장 적용 가능 시점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목표 미달성 시에도 후속 과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할 계획이나, '도전적 연구'에 대한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구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
- 특히, 글로벌 R&D에 대한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마련하거나, 혁신적·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지침을 개정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과의 부합성이나 R&D 예산 이월에 대한 통제 가능성, 국가 재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예산분석과 이미션 예산분석관(02-6788-4628)

6) (현행)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정부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로 제한  
→ (변경) 글로벌 연구에 한하여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최대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는 최대 4개로 완화 계획



# 병 복지 관련 예산 현황

## 병 봉급 인상 추진 현황

-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2~2025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인 병 봉급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인상을 추진 중
- 정부의 병 봉급 및 매칭지원금 인상 계획에 따르면, 병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을 합한 병사 수령액은 병장 기준 2022년 81만 7,000원에서 2025년 205만원으로 인상될 계획
  -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현역병 등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적절한 급여를 전역 후 지급하는 적금제도로, 정부는 일정 한도 내에서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매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연차별 병 봉급 및 매칭지원금 인상계획

(단위: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병 봉급	병장	676,100	1,000,000	1,250,000	1,500,000
	상병	610,200	800,000	1,000,000	1,200,000
	일병	552,100	680,000	800,000	960,000
	이병	510,100	600,000	640,000	768,000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월 최대 지원금)		141,000	300,000	400,000	550,000
월 수령액 합계(병장 기준)		817,100	1,300,000	1,650,000	2,050,000

주: 2022년과 2023년은 인상계획대로 예산이 확정되었고, 2024년의 경우 인상계획과 동일하게 정부 예산안에 반영  
자료: 국방부

## 2022~2024년 병 인건비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지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안
병 인건비	2,252,366	2,852,461	3,265,526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병내일 준비지원)	90,386	658,421	1,030,341
합 계	2,342,752	3,510,882	4,295,867

자료: 국방부

## 병사 대상 현금·현물성 지원 등 병 복지 관련 예산 현황

- 병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방부의 보도설명자료<sup>1)</sup> 등을 바탕으로 2023년 예산 및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병 복지 관련 예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현금성 지원(병 이발비, 병 휴가비, 자기개발비용지원, 축구화 구매비용 지원), 현물성 지원(각종 특식 등), 복무여건 개선(얼음정수기,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등)

### 병 복지 관련 예산 현황

구 분	내 용	지원기준/단가
병 이발비	• 병사가 부대 내가 아닌 민간 이발소·미용실에서 이발할 수 있도록 지원	연 12회 × 12,700원
병 휴가비 (효도휴가비)	• 기본 지급 휴가비(교통비, 식비) 외에 병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급	연 1.5회 × 1만원
자기개발비용지원	• 병사가 지출한 강의로, 학습용품비, 자격시험응시료, 문화관람비 등 자기개발비용 지원	자기개발비용의 80% (연간 최대 12만원)
축구화	• 병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축구화 지원(2004~2022년 현물, 2023년 현금지원)	연 13,070원
경축일특식	• 설날, 추석, 국군의날 등 경축일에 특식 지급	연 9회 × 3,000원
생일특식	• 병사 생일에 케이크 등 특식 지급	연 1회 × 15,000원
영내자증식	• 병 사기 진작을 위해 떡, 케이크 등 간식 지급	연 12회 × 5,742원
지역상생장병특식	• 부대 인근 지역업체의 포장, 배달, 식당 방문 등의 방식으로 병사에게 특식 제공	연 9회 × 1만원
원격강좌 수강지원	• 병사의 학점취득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급	연 2회 × 11.7만원 (수강료, 수수료 합계)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 병사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민간병원 진료를 선택한 병사의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금의 80%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 동계 기간 병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방한효과가 높은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33,101원/개
얼음정수기 보급	• 병사의 여름철 얼음음료 등 섭취가 가능하도록 병영생활관에 얼음정수기 보급	병영생활관 5실당 1대 대당 임차료: 12개월 × 4.5만원

주: 지원기준/단가는 2023년 기준. 신규사업인 플리스형 스웨터 및 얼음정수기 보급의 지원기준/단가는 2024년 예산안 기준  
자료: 국방부

1) 국방부, '월급 올린다면 특식·이발비 등 안줘, 장병복지 조삼모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2023.11.1.



- 2024년 예산안의 경우,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하여 병 이발비, 효도휴가비, 자기개발비용, 축구화 구매비용 지원 등 일부 현금성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원격강좌 수강지원 등의 지원 예산은 유지되었으며, 각종 증·특식 관련 예산은 그 구성이 변화되었음
  - 병 이발비(△458.6억원), 효도휴가비(△59.0억원), 축구화 구매비용 지원(△29.5억원), 자기개발비용지원(△179.7억원) 등 현금성 지원의 경우 병 봉급 인상을 고려하여 예산 삭감
  -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원격강좌 지원의 경우 사업목적 및 지원취지를 고려하여 예산 유지
  - 증·특식의 경우 경축일특식(△58.4억원), 영내자증식(△80.0억원), 생일특식(△48.4억원) 예산은 감액되었으나 지역상생장병특식(223.8억원) 예산은 증액

## 2023~2024년 병 복지 관련 예산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A)	2024년 예산안(B)	증감		비 고
			B-A	(B-A)/A	
병 이발비	45,863	-	△45,863	△100.0	병 봉급 인상 고려 삭감
병 휴가비(효도휴가비)	5,895	-	△5,895	△100.0	병 봉급 인상 고려 삭감
자기개발비용지원	35,971	17,972	△17,999	△50.0	지원항목 축소(운동화 제외)에 따른 삭감
축구화	2,950	-	△2,950	△100.0	병 봉급 인상 고려 삭감
경축일특식	8,720	2,877	△5,843	△67.0	기본급식 질적 개선에 따른 필요성 저하로 삭감 (연 9회 → 연 3회)
생일특식	4,844	-	△4,844	△100.0	병 봉급 인상 고려 삭감 (연 15,000원 → 폐지)
영내자증식	22,340	14,339	△8,001	△35.8	기본급식 질적 개선에 따른 필요성 저하로 삭감 (1회 5,742원 → 4,000원)
지역상생장병특식	29,134	51,512	22,378	76.8	병 급식만족도 제고를 위해 증액
원격강좌 수강지원	2,787	2,787	-	0.0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19,576	16,559	△3,017	△15.4	예산 집행률 고려 삭감 (지원기준/단가 유지)
플러스형 스웨터 보급	623	7,114	6,491	10.4	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장병 대상 보급
얼음정수기 보급	-	6,508	6,508	순증	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에 전면 도입
합 계	178,703	119,668	△59,035	△33.0	

자료: 국방부

## 추진 시 고려사항

-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인건비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2024년 예산안 기준 전년 대비 7,848억원 증액), 그 규모가 병 복지 관련 예산의 조정 규모(2024년 예산안 기준 전년 대비 590억원 감액)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병 복지 관련 예산 중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지원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추가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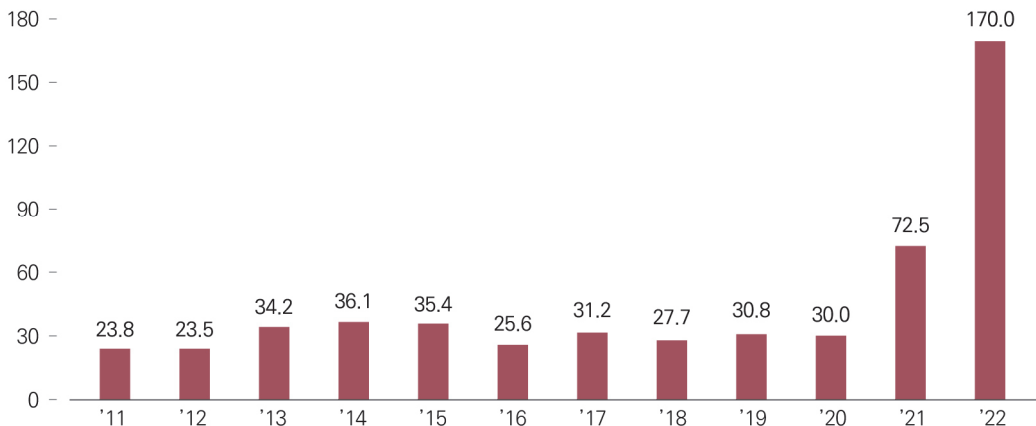
# 방위산업 수출 및 금융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 최근 방위산업 수출 동향

-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30억불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21년 72.5억불, 2022년 173억불을 달성하는 등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2023년에는 200억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함
  - 이러한 방산수출 성장세는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의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다연장 로켓 천무 등의 계약성사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23년 3월 현재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 기준으로 한국은 글로벌 방산시장의 2.4%를 차지하여 9위권에 해당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폴란드와의 계약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순위 상승이 기대되고 있음
- 권역별로는 과거 아시아, 북미 중심에서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품목별로도 과거 탄약, 함정 중심에서 최근에는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유도무기까지 다양화·첨단화되고 있음

## 2011년~2022년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 현황

(단위: 억달러)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방위산업 수출 금융지원 제도와 현황

- (수출금융) 수출금융은 일반적으로 '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외 실물거래(상품, 선박, 플랜트 등)를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의 신용 공여(대출, 보증, 보험 등)를 의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은 자국의 수출촉진 등을 위해 공적수출신용기관(ECA: Export Credit Agency)을 설립하여 대출·보증·보험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
  - 'OECD 수출신용협약'상 ECA 수출금융 지원은 ① 수출신용보증 또는 보험 등의 간접금융지원 방식(Pure Cover)과 ② 직접 신용 또는 리파이낸싱, 이자율 지원 등의 직접 금융지원 방식(Direct Credit)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규범 측면에서는 일반상품의 수출거래는 국제규범(WTO 보조금 협정, OECD 수출신용협약) 준수가 원칙이나 방산 수출은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에 따라 국제규범에서 예외가 허용되는 편
  - 대부분의 선진국(특히 유럽)은 방산 수출에 대해 상업금융기관이 Loan을 제공하고 ECA가 위험을 보증(Cover)하는 간접금융지원방식으로 운영<sup>1)</sup>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적수출신용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수출입기업, 금융기관 등에 수출입 및 해외투자 촉진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지원<sup>2)</sup>
- (방산 수출) 수출대상국가가 후진국인 경우 국가위험도가 높고 자국 재무 상황 등을 이유로 공급자에게 금융지원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외국의 군수품 정부조달과 같이 장기거래로 대출 규모가 크거나 살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방산 분야의 경우 상업은행을 통한 일반 외화대출이나 보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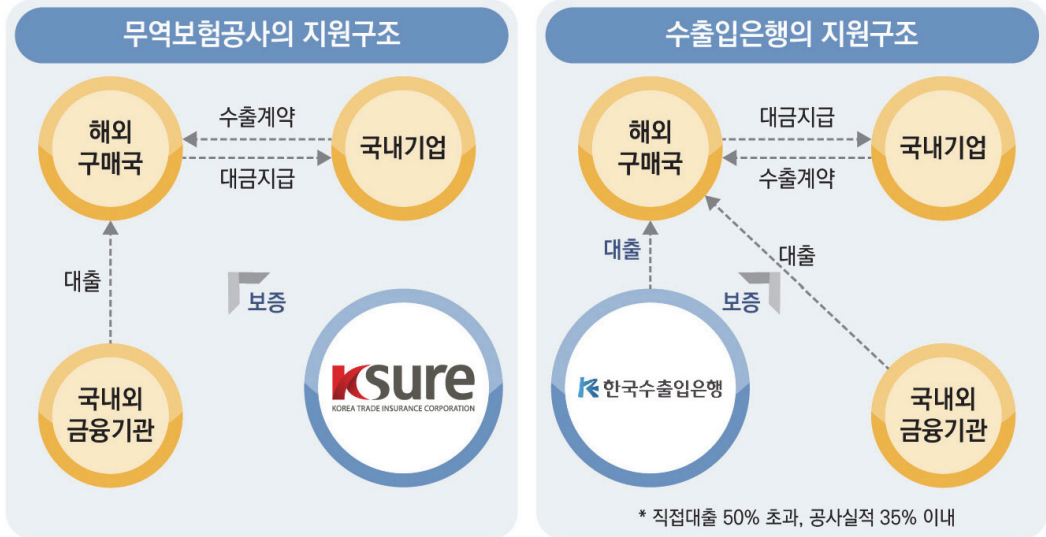
※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23년 무기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한국의 무기수출에 대한 주요 수입국은 ① 필리핀(16%) ② 인도(13%) ③ 태국(13%) 등으로 파악
- (국내 현황) 방산수출거래가 대형화되고 방산시장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ECA를 통해 구매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계약 체결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는 중
  -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수출기반자금)과 보증(수출금융보증 등 채무보증, 이행성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단·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의 금융지원 제공

1) OECD의 Export Credit Group 참여 ECA List(2022.1 기준)에 의하면, 38개 OECD 회원국 중 28개국(영국,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콜롬비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이 국별로 1개 ECA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스웨덴의 6개국은 각국에서 2개의 ECA를 운영 중임

2)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대출(한국수출입은행), 보증(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의 방식으로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방산 정책금융지원 구조 예시



자료: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방산수출 종합 가이드북」, 2021.11.

- 2022년 폴란드 1차 이행계약진,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및 인도네시아 T-50 및 잠수함 수출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을 통한 수출금융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는 한편, 최근에는 약 30조원 규모의 폴란드와의 2차 무기수출 계약 체결을 앞두고, 폴란드 정부에 대한 금융지원 방식 및 규모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 수출금융 지원 확대 관련 쟁점

- 폴란드와의 2차 무기수출 계약 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되며 폴란드 측은 우리 측에 약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요청함
- 그러나 현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sup>3)</sup>」은 특정 대출자의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바, 현재 수출입은행은 법정 자기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하여 18조 4,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폴란드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액은 법정한도 6조원을 포함하여 총 7조 3,600억원임. 2022년 폴란드와 약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sup>4)</sup>을 체결하면서 6조원의 신용공여를 이미 제공했기 때문에 현재 지원 가능한 한도는 1조 3,600억원에 불과한 상황임

### K-방산 폴란드 무기수출 계약 현황

업체	계약 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계약]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로켓 218문</li> <li>• [2차 계약] K-9 자주포 154문 계약완료, 천무 70문 계약협상 중</li> </ul>
현대로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계약] K-2 전차 180대</li> <li>• [2차 계약] K-2 전차 180대 우선납품 계약협상 중</li> </ul>
한국항공우주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계약] FA-50 경공격기 48대</li> </ul>

자료: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이 변동된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 간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신용위험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수출입은행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② (생략)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차 계약 당시에는 수은과 무보가 각각 6조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은은 대출과 보증을 50%씩 지원하고, 무보는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상업은행의 자금을 끌어오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디케이트론<sup>5)</sup>’ 방식을 통해 폴란드 2차 계약에 최대 8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은행의 수출금융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2014년 이후 15조원으로 고정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sup>6)</sup>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볼 필요
  -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기자본금 규모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sup>7)</sup>」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황
  - 참고로, 자금차입이나 채권발행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등<sup>8)</sup> 및 보원자본의 합으로, 납입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 추진 시 고려사항

-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실제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개정안에 따르면 약 15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추가로 확충해야 하므로 재정상 여력과 출자 방식(현물 또는 현금) 및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
- 다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통해 확보된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방산 등 특정 산업 또는 대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소외받는 분야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경제 전반의 금융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입은행의 여신 등 정책을 운영할 필요

행정예산분석과 유민호 예산분석관(02-6788-4643)

5) 둘 이상의 복수 금융기관이 공동의 조건으로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방법

6) 수는 법정자본금 변경 추이: '98. 1월 2조원 → '98. 9월 4조원 → '09. 1월 8조원 → '14. 1월 15조원

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안번호 2103267, 2123261, 2125108)

8) 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비지배주주지분-무형자산 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2023. 8. 29.)

- 국토교통부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주택마련 등의 비용부담이 결혼 및 출산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
  - 기존에 신혼부부 특공·대출 등의 지원이 있었으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혼인하는 경우 주택 대출, 청약 등이 미혼에 비해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 왔음
    - ※ 소득요건: (전세자금) 미혼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구입자금) 미혼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가구 중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79억원 이하
  - 연 3만호 수준 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연 1만호 수준 공급(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 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공급

##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 (기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9억원) 및 대출한도(4→5억원) 상향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
    -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
    - ※ (기존)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한도)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
    -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1.2~2.4	1.1~2.3
※1자녀 기준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자료: 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023.8.29.)」

혼인·출산에 유리하도록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 (기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에 비해 청약 시 불리
  -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 적용
    - ※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 유지

구분	현행		개선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140% (특별공급)	미혼 100% (일반공급)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신청 허용) 기존에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를 1회로 한정하였으나 향후 중복 당첨 시 선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준을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기존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생애최초)·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향후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청약 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기존에는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하였으나 향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을 조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를 발간(2023.11.)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sup>1)</sup>에 근거하여 각 중앙부처가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별 집행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인 R&D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대상연도(2022.1.1~12.31)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정보 2개(사업목적, 사업내용), 투입정보 12개(연구비,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성과정보<sup>2)</sup> 6개(논문, 특허 등)의 총 20개 항목을 조사·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단위는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과제와 위탁과제 기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은 28조 6,782억원<sup>3)</sup>(38개 중앙부처, 1,397개 세부사업, 76,052개 세부과제)으로 전년대비 7.9% 증가

- 최근 5년간('18~'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은 연평균 9.7%, 세부과제 수는 연평균 4.5% 증가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단위: 건,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평균 증가율
세부과제 수	63,697	70,327	73,501	74,745	76,052	9.7
집행액	197,759	206,254	238,803	265,791	286,782	4.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는 2023년 12월 발표 예정

3)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29조 7,770억원 대비 96.3% 집행



## 주요 5개 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방위청, 교육부, 중기부)이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집행액의 77.4%(22조 2,025억원)를 차지

- 집행액 상위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높은 비중(31.1%, 8조 9,089억원)을 차지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17.7%, 5조 675억원), 방위사업청(14.3%, 4조 1,061억원), 교육부(8.3%, 2조 3,904억원), 중소벤처기업부(6.0%, 1조 7,296억원) 등이며, 그 밖에 해양수산부(2.9%, 8,370억원), 농촌진흥청(2.8%, 8,124억원), 보건복지부(2.2%, 6,224억원) 등의 순

### 2022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472	31.4	89,089	31.1	5,617	△0.3
산업통상자원부	46,451	17.5	50,675	17.7	4,224	0.2
방위사업청	38,497	14.5	41,061	14.3	2,564	△0.2
교육부	23,058	8.7	23,904	8.3	846	△0.3
중소벤처기업부	16,650	6.3	17,296	6.0	646	△0.2
다부처	8,645	3.3	9,252	3.2	607	△0.0
해양수산부	7,524	2.8	8,370	2.9	846	0.1
농촌진흥청	7,705	2.9	8,124	2.8	419	△0.1
보건복지부	5,768	2.2	6,224	2.2	456	0.0
국토교통부	5,979	2.2	5,622	2.0	△357	△0.3
국무조정실	5,424	2.0	5,571	1.9	147	△0.1
환경부	4,011	1.5	4,247	1.5	236	△0.0
기획재정부	10	0.0	2,878	1.0	2,868	1.0
농림축산식품부	2,281	0.9	2,662	0.9	381	0.1
산림청	1,348	0.5	1,471	0.5	123	0.0
질병관리청	1,167	0.4	1,448	0.5	281	0.1
문화체육관광부	1,102	0.4	1,290	0.4	188	0.0
기상청	1,161	0.4	1,236	0.4	75	△0.0
원자력안전위원회	1,143	0.4	1,149	0.4	6	△0.0
식품의약품안전처	1,056	0.4	1,102	0.4	46	△0.0
기타 부처	3,312	1.2	4,087	1.4	775	0.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구기관 중심(36.2%)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대학과 중소기업 비중은 소폭 증가(24.8% → 25.7%)**

- 출연(연) 집행액은 10.4조원(36.2%), 기업 집행액은 8.0조원(27.7%), 대학 집행액은 7조원(24.3%)
  - 출연연구기관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9조원(17.2%)으로 가장 크며, 부처 직할 출연연 4.8조원(16.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 0.6조원(2.1%)의 순
  - 기업 중 중소기업이 5.5조원(19.2%), 중견기업 1.9조원(6.5%), 대기업 0.6조원(2.1%)의 순

2022년도 연구수행주체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출연연구소	96,058	36.1	103,737	36.2	7,679	0.0
대학	63,317	23.8	69,738	24.3	6,421	0.5
중소기업	49,721	18.7	54,924	19.2	5,203	0.4
중견기업	16,166	6.1	18,716	6.5	2,550	0.4
국공립연구소	12,313	4.6	13,024	4.5	711	△0.1
대기업	4,327	1.6	5,889	2.1	1,562	0.4
정부부처	2,634	1.0	626	0.2	△2,008	△0.8
기타	21,254	8.0	20,128	7.0	△1,126	△1.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단계별 집행 현황은 개발연구 9.7조원(46.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초연구 5.8조원(28.0%), 응용연구 5.2조원(25.2%) 등의 순**

- 2021년 대비 기초연구 비중과 응용연구 비중은 소폭 증가, 개발연구 비중은 소폭 감소
  - 기초연구 비중: ('18) 32.7% → ('19) 32.7% → ('20) 30.1% → ('21) 27.5% → ('22) 28.0%
  - 응용연구 비중: ('18) 20.2% → ('19) 21.5% → ('20) 23.1% → ('21) 23.6% → ('22) 25.2%
  - 개발연구 비중: ('18) 47.1% → ('19) 45.8% → ('20) 46.8% → ('21) 48.9% → ('22) 46.8%



## 2022년도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연구 개발 단계	기초연구	53,068	27.5	58,024	28.0	4,956	0.5
	응용연구	45,620	23.6	52,338	25.2	6,718	1.6
	개발연구	94,566	48.9	97,032	46.8	2,466	△2.1
	소계	193,254	100.0	207,394	100.0	14,140	-
기타	72,537	-	79,388	-	6,851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래유망신기술(6T)<sup>4</sup> 분야별 집행 규모는 17조 6,571억원(64.8%)이며 BT 분야 집행 비중이 가장 높음

- BT 분야 5.2조원(19.1%), IT 분야 5.0조원(18.2%), ET 분야 3.7조원(13.6%), ST 분야 2.1조원(7.6%), NT 분야 1.3조원(4.9%), CT 분야 0.4조원(1.4%) 등의 순

## 2022년도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미래 유망 신기술 (6T)	BT(생명공학기술)	47,766	19.0	52,026	19.1	4,260	0.1
	IT(정보기술)	49,004	19.5	49,607	18.2	603	△1.3
	ET(환경기술)	33,993	13.5	37,159	13.6	3,166	0.1
	ST(우주항공기술)	20,498	8.2	20,630	7.6	132	△0.6
	NT(나노기술)	12,498	5.0	13,343	4.9	845	△0.1
	CT(문화기술)	3,260	1.3	3,807	1.4	547	0.1
	소계	167,019	66.5	176,571	64.8	9,553	△1.6
기타 분야	84,255	33.5	95,758	35.2	11,503	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에 의거 미래유망 신기술을 6T로 구분하여 조사, 미래유망신기술(6T):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에너지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8.7조원(33.4%), 지방 17.3조원(66.6%) 집행

- 지방 집행 비중은 2020년 소폭 증가한 이후 2021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2022년은 전년 수준 유지
  - 수도권: ('18년) 33.2% → ('19년) 32.6% → ('20년) 31.7% → ('21년) 33.9% → ('22년) 33.4%
  - 지방: ('18년) 66.8% → ('19년) 67.4% → ('20년) 68.3% → ('21년) 66.1% → ('22년) 66.6%

#### 2022년도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단위: 억원, %, %p)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집행액	비중	
수도권	서울특별시	48,767	20.1	51,223	19.7	2,456	△0.4
	경기도	28,082	11.6	30,038	11.6	1,956	△0.0
	인천광역시	5,243	2.2	5,410	2.1	167	△0.1
	소계	82,092	33.9	86,671	33.4	4,579	△0.5
지방	부산광역시	10,002	4.1	11,355	4.4	1,353	0.2
	대구광역시	7,168	3.0	7,376	2.8	208	△0.1
	광주광역시	5,708	2.4	5,678	2.2	△30	△0.2
	울산광역시	3,651	1.5	3,810	1.5	159	△0.0
	대전광역시	68,208	28.2	74,698	28.8	6,490	0.6
	강원도	3,601	1.5	4,217	1.6	616	0.1
	경상남도	19,628	8.1	20,362	7.8	734	△0.3
	경상북도	7,271	3.0	8,127	3.1	856	0.1
	충청북도	7,656	3.2	8,121	3.1	465	△0.0
	충청남도	6,455	2.7	7,333	2.8	878	0.2
	전라북도	9,296	3.8	9,759	3.8	463	△0.1
	전라남도	3,654	1.5	4,108	1.6	454	0.1
	제주특별자치도	1,858	0.8	1,884	0.7	26	△0.0
	세종특별자치시	5,877	2.4	6,218	2.4	341	△0.0
	소계	160,033	66.1	173,046	66.6	13,013	0.5
기타	해외	413	0.2	469	0.2	56	0.0
	기타	23,252	9.6	26,596	10.2	3,344	0.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 분만수가 및 소아진료 수가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는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만수가 개선 및 소아진료 수가 개선(소아 진료 정책가산 신설)을 위해 연간 약 3천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2023.10.26.)
-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및 의료수요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를 개선할 필요
  - 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10년 동안 47.3% 감소('12년 46.7만 건 → '22년 24.6만 건)
  - 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년 동안 36.7% 감소('12년 729개소 → '22년 461개소)
- 소아 의료수요 감소와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 소아진료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할 필요
  -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2년 2,135개소로, '19년 대비 92개소(△4.1%) 감소. 반면, 전체 의원의 경우 '22년 34,958개로, '19년 대비 2,467개소(7.6%) 증가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18년 100% → '22년 27.5% → '23년 25.5%로 감소

## 분만수가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분만수가 개선(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sup>1)</sup>)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2023.1.31.)에서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분만수가 개선은 이 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2023.11.2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하여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도입
  - (지역수가)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별·광역시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
  - (안전정책수가)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②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
- ※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 지역수가(55만 원) 및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적용  
 특별·광역시: 안전정책수가(55만 원) 적용
-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원) 지원
  - 분만의 절대 건수는 많지 않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많이 수행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 등 어려운 진료 분야에 대한 보상 강화

분만수가 개선 내용 요약

분만	종별	기본 (종별가산 포함)	(신설)	(신설)	계	(개선)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고위험·난이도)
자연 분만 (행위 수가)	의원	79만원	55만원	55만원	189만원	77만원 ~154만원
	상급 종합	78만원			187만원	
			+	+	=	+
제왕 절개 (포괄 수가)	의원	185만원	55만원	55만원	295만원	55만원
	상급 종합	296만원			406만원	

주: 1. 초산 및 단태아 기준, 합병증이 없는 건강한 산모 진료 시  
 2. 자연분만은 행위별수가제로 분만료 기준 (마취료, 처치료, 입원 중 검사 등 동반 비용 제외), 제왕절개는 포괄수가제로 동반비용이 포함된 입원 기간 내 전체 비용 기준이므로 단순 비교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0.26.)를 바탕으로 재작성





## 소아진료 수가 개선(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하여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 연간 약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2024년 1월부터 적용)
  -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소아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 따라, 중증·응급 소아진료 강화, 병원 간 협력 지원, 지역 소아의료 공백 완화, 소아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보건복지부, 2023.2.22., 2023.9.22.)을 마련하여 추진 중
  - 소아진료 정책가산은 이 중 지역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해 수가 보상을 통해 지원하는 것임
  - (산정기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
    - ※ (소아청소년과 기준) 의원의 경우 표시과목 기준, 병원의 경우 진료과목 기준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의미함

### 소아진료 정책가산금

(단위: 원)

분 류	금 액
가. 소아진료 정책가산 - 1세 미만	7,000
나. 소아진료 정책가산 - 1세 이상 ~ 6세 미만	3,500

주: 표의 금액은 '23년 의원 초진진찰료(17,320원) 대비 1세미만은 40%, 1세 이상-6세 미만은 20% 수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10.26.)를 바탕으로 재작성

- (환자본인부담) 정책가산 신설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환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은 400원(의원) ~ 1,400원(상급종합), 6세 미만은 700원(의원) ~ 1,500원(상급종합) 증가 예상

## 추진 시 고려사항

- 공공정책 수가 지원은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분만 지역수가 신설은 지역(특별·광역시 vs. 그 외) 기준에 따라 설계된 것으로, 각 지역의 분만 건수 및 의료수요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지역에 따라 분만 인프라가 열악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 효과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소아진료 정책가산이 실제 소아진료 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의 소아진료 인프라 유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수지 예산분석관(02-6788-4646)

##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

행정안전부,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발표(2023. 9. 22.)

-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27조의4에 근거하여 매년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실적 및 집행실적을 공개함
- 2022회계연도에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은 총 994개이며, 정부 예산현액 85.3조원 중 83.1조원이 교부됨(교부율 97.4%)
- 2022년도 국비 교부액(83.1조원) 및 전년도 이월 국비액(4.9조원)을 합한 자치단체 예산현액은 88.0조원이며, 이 중 77.5조원이 집행됨(집행률 88.1%)

###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단위: 억원, %)

정부 예산현액	국비 교부액	자치단체 예산현액 <sup>1)</sup>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sup>2)</sup>
		합계	교부액	이월액				
852,802	831,048	879,903	831,048	48,854	774,778	75,596	29,421	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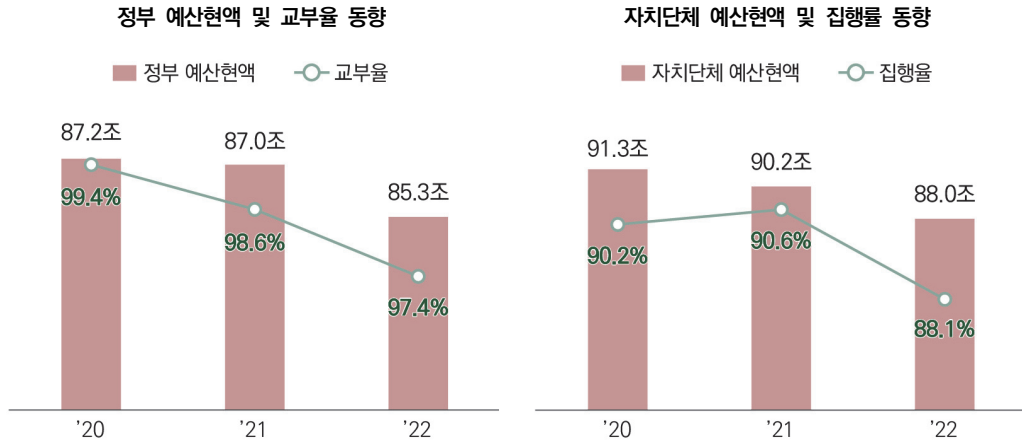
주: 1) 국비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 국비액을 합한 금액

2)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현액(교부액+이월액)에서 집행한 비율

1. 정부 예산현액과 국비 교부액의 차이(21,754억원)는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지방비 미확보, 사업 준비 부족 등에 따른 국비 미교부 등에 기인

자료: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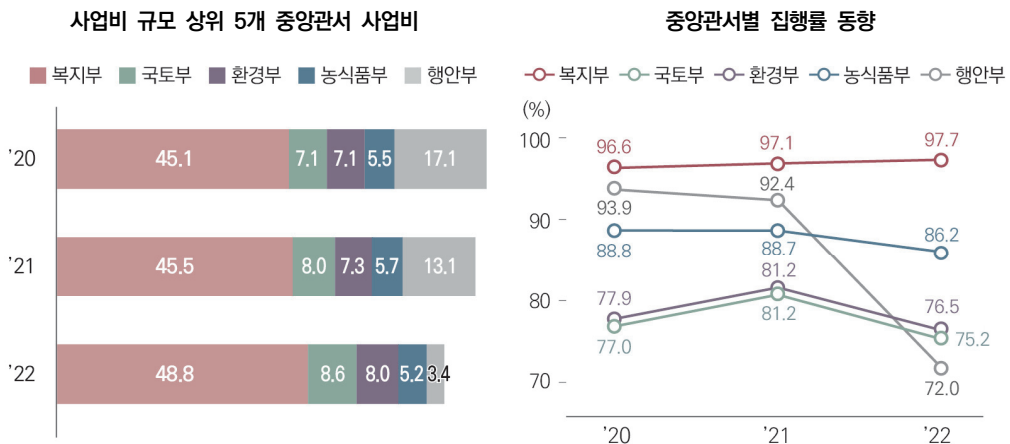
- 2022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율은 97.4%로 전년 대비 1.2%p 하락하였으며, 집행률은 88.1%로 전년 대비 2.5%p 감소함
  - 교부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20년 99.4% → '21년 98.6% → '22년 97.4%)이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2%p 하락함
  - 집행률은 최근 3년간 88~90%대 수준('17년 90.2% → '18년 90.6% → '19년 88.1%)으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 전년 대비 2.5%p 감소함



자료: 행정안전부

### 부처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규모 및 집행률 비교

- 2022년도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부처별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사업비(자치단체 예산현액) 기준 상위 5개 부처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순임
- 상위 5개 부처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집행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0.6%p)하였으나, 국토교통부(△6.0%p), 환경부(△4.7%p), 농림축산식품부(△2.5%p) 및 행정안전부(△20.4%p)는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사업 분야별 교부 및 집행실적 분석결과

- 사업 분야별 교부 및 집행실적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교부율과 집행률이 모두 높은 반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부율 대비 집행률이 저조함
  - 사회복지 분야는 교부율과 집행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높은 반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부율은 90% 이상이지만 집행률은 60% 미만으로 저조함
  - 사회복지 분야의 높은 집행률은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현금지급 성격으로 집행이 용이한 경상 보조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문화·관광분야와 국토·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시설 확충, 건설 사업이 주를 이루어 사업계획 변경,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부진한 측면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주요 분야별 교부 및 집행실적

(단위: %)

구분	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보건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질서 및 안전	일반·지방행정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부율	99.4	96.3	93.0	86.0	98.5	98.1	93.2	100.0	99.4	98.5
집행률	97.7	84.7	78.6	79.3	64.6	54.3	53.2	67.8	83.9	78.7

주: 1. 국고보조사업은 총 13개 분야(사회복지, 농림수산, 환경,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보건, 공공 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일반·지방행정, 과학기술, 교육, 국방, 통일·외교 분야로 분류되며, 위 표는 이 중 예산규모가 높은 10개 분야에 대한 교부 및 집행실적임

자료: 행정안전부

## 추진 시 고려사항

-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교부율 및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치단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국비 신속교부 등 필요
  - 부처는 사업수요, 사전절차 및 장애요인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사전에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대응지방비 확보 등 제반여건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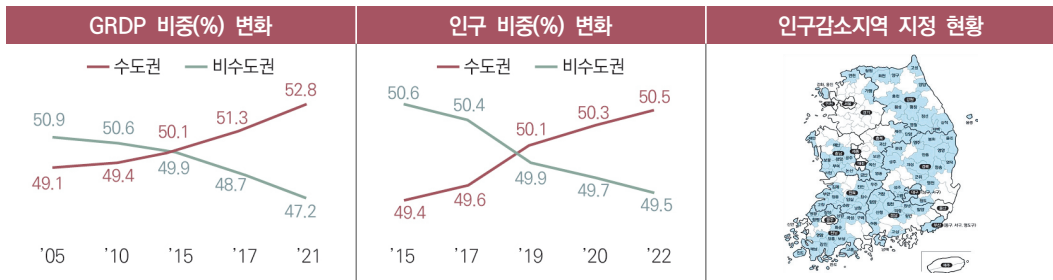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 정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2023.11.1.)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발표(2023.11.1.)
  -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도입된 이후 20년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두 계획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으로, ① 17개 시·도가 제출한 시·도 지방시대 계획, ②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 ③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함
  - (추진체계) 지방정부·중앙정부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지방정부·중앙정부의 자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의견 및 지역별 인센티브 차등 배분, 우수사례 포상·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
- (수립배경)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으로 실질적 성과 창출 한계, 지방경제 체질 악화로 신성장동력 창출 역량 저하, 교육과 정주여건의 격차 확대로 지방인재 유출 심화 등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격차 확대('10년  $\Delta$ 1.2%p  $\rightarrow$  '23년 5.6%p), '22년 기준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 전체 인구 50.5%가 수도권 거주
  - (지방인구 감소 가속화) 저출생, 고령화, 청년인구 수도권 집중 등으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 일자리·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인구감소의 악순환으로 인구위기 초래

###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 감소의 현주소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1.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주요 내용

- 지난 9월 14일에 발표한 '지방시대 5대 전략'에 기반하여 17개 부처·청, 17개 시·도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도록 편제 구성하였으며, 중앙부처는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

\* 지방시대 5대 전략: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

5대 전략	22개 핵심과제	
1.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①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③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⑤ 지방의 책임성 확보	②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④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2.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①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 ③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②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3.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① 기회발전특구와 혁신성장거점 육성으로 성장동력 확충 ②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조성 ④ 글로벌 선도형 지역과학기술 진흥 ⑥ 지역 맞춤형 창업 및 혁신생태계 조성	③ 지역특화형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⑤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
4.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①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③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 확충 ④ 지역주도의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② 지역 고유자원 활용 문화·관광 육성
5.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①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원 ③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생활여건 개선 ④ 지역 환경·생태자원의 보전 및 활용	②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1.을 바탕으로 재작성

### 권역별 주요 지역정책과제(부문별 계획에 반영)

권역	주요 지역정책과제		
	지역산업	교통인프라	지역숙원사업 등
서울·인천·경기	- 영종항공정비 단지 조성 및 공항경제권 구축(인천)	- 경인고속도로(남청라IC~신월IC) 지하화,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추진(인천) - 서울~동두천~연천 간 남북고속도로 건설, 외곽순환고속도로 미연결구간 완성 추진(경기)	- 재건축, 재개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조기폐차 유도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서울) - 1기 신도시 종합 재정비 방안 마련(경기)
강원	- 데이터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	-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완공 - 동서고속도로(삼척~영월) 착공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대전·세종·충북·충남	-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전,세종) -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대전) - 탄소중립 거점도시 조성(충남) -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충북)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세종,충북) - 서산 민간공항 건설(충남) -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대전) - 충북선 철도 고속화(충북)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세종) - 방위사업청 이전(대전) - 금강하구, 가로림만 생태복원(충남)



권역	주요 지역정책과제		
	지역산업	교통인프라	지역숙원사업 등
광주·전북·전남	- AI 대표도시 조성(광주) - 국가식품클러스터 확대(전북) - 탄소중립클러스터 조성(전남) - 우주발사체클러스터 조성(전남)	- 달빛철도 건설(광주, 대구) - 새만금 인프라 조성(전북) - 전라선 철도 고속화(전남)	-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 군공항 이전(광주) -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전북)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전남, 경남)
대구·경북	- 데이터, 로봇 신산업 육성(대구) -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조성(경북)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대구, 경북) - 달빛철도 건설(대구, 광주) - 문경~김천 연결 철도 건설(경북)	- 대구 취수원 다변화(대구) - 문화관광 산업벨트 조성(경북)
부산·울산·경남	-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부산) -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울산) - SMR 중심 원전기술 개발,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경남)	-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산)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울산, 경남) - 남부내륙철도 개통(경남)	- 산업은행 부산 이전, 2030 엑스포 개최 기반 구축(부산) -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울산)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경남, 전남)
제주	- 신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경제 도시 조성	- 제주 제2공항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 해녀의 전당 등 제주 문화가치 확산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1.을 바탕으로 재작성

- 시·도에서도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목표를 반영하여,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현을 계획
  -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에 정착시키며,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하여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과 지역 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5개년 계획에 포함

시·도 지방시대 계획

전략별	시·도별 주요 과제(예시)
자율성을 키우는 지방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 조성</li> <li>- (세종)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형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li> <li>- (강원)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li> </ul> </li> <li>•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li> <li>- (충남)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 주민주도 민주주의 강화</li> </ul> </li> </ul>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 운영</li> <li>- (인천)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li> <li>- (전남) 전남이 키워 전남을 키우는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 조성</li> <li>- (경북) 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li> <li>- (경남)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li> </ul> </li> </ul>

전략별	시·도별 주요 과제(예시)
일자리 늘리는 혁신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소프트웨어 의료산업,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 구축</li> <li>- (광주)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li> <li>- (경남)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li> </ul> </li> <li>•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추진</li> <li>- (대전)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양자, UAM) 등 4대 핵심전략 산업(+α) 육성</li> <li>- (충남)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li> </ul> </li> </ul>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li> <li>- (강원)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li> </ul> </li> <li>•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 강화</li> <li>- (세종)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 강화 및 의료 허브도시 도약</li> </ul> </li> <li>•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정원도시 서울' 구현</li> <li>- (부산)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li> </ul> </li> </ul>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보도자료, 2023.11.1.을 바탕으로 재작성

- 동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포함됨
  -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포함

**초광역권발전계획(구상도 발췌)**

구분	주요 초광역 협력 사업	
초광역권	충청권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광주·전남권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차세대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대구·경북권	Si기반 지역특화로봇 개발, 모빌리티 핵심부품 및 차량플랫폼
	부울경	수소산업벨트 구축,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특별자치권	강원권	그린수소 저장 운송 충전 기기, 천연물 의약소재 상용화
	전북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화, 탄소복합소재 사업화
	제주권	청정생물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 디지털융합 관광산업 활성화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2023.11.을 바탕으로 재작성



#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 발표(2023.9.)

##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현황

-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에서 14개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함
  - 재무위험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기관의 부채 및 자산 규모가 전체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 기관들의 재무 악화가 향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 효율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통해 재무위험기관 탈피,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를 목표

### 재무위험기관 현황

요건	기관명
사업수익성 악화(징후)기관(9)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및 5개 발전자회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5)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자료: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p.5

-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개 기관은 2022년 12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 추가 감축노력과 2022년 실적을 포함한 수정된 재정건전화 계획을 발표함
  - 수정된 「재정건전화계획」<sup>1)</sup>의 주 내용은 향후 5년 동안 총 42.2조원 규모의 부채감축과 자본확충을 추진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2022년 재정건전화실적 8.1조원에 2023~2026년 재정건전화목표 34.1조원을 포함한 수준임
  - '사업조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2.6조원을 감축하여 총 15.7조원의 재무개선 예정
  - '자본 확충'의 경우 추가 감축 6.467억원을 통해 총 10.7조원의 부채감축 및 자본확충 수행
  - '경영효율화'로 추가적으로 1.3조원을 감축하여 총 6.7조원을 감축
  - '자산매각' 추가적으로 3.2조원을 감축해 7.5조원의 재무개선 예정
  - 수익확대 방안을 통해서 1.4조원의 재무재선을 계획

1) 재무위험기관의 '22~'26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기존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22~'26년)에 재정건전화계획(개선택)을 반영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및 2023년 수정계획

(단위: 억원, %)

구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기존 계획	42,758	131,188	53,894	12,111	100,998	340,949
추가 노력	32,735	25,985	13,616	2,348	6,467	81,151
합계 (비율)	75,493 (17.9)	157,173 (37.2)	67,510 (16.0)	14,459 (3.4)	107,465 (25.5)	422,100 (100.0)

주: 괄호 안은 기존계획과 추가노력 합계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p.6

-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 절감방안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등임
  - 자산매각의 경우 혁신계획 내 자산효율화 계획 1.5조원, 한국철도공사의 부산정비단 매각을 통해 1조원 규모 재원 확보 등이 있음
  - 사업조정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해외그린수소 사업규모 조정이 1.4조원 규모의 증가요인이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원전건설 투자 증가는 0.8조원 규모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 한국전력공사는 석탄발전상한제<sup>2)</sup> 유보 등을 통해 3조원 규모의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배당절감액을 기존 계획목표에서 제외하여 1.7조원 규모의 감소요인이 됨
  - 자본확충의 경우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을 통해 0.5조원의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자산 재평가 계획 철회의 경우 0.3조원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함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 증감요인

방 식	증감요인	주요 내역
자산매각	증가요인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계획(1.5조원) 부산정비단 매각(한국철도공사, 1조원)
	감소요인	해외자산 평가액 하락(한국광해광업공단 △254억원)
사업조정	증가요인	해외그린수소 사업규모 조정(한국가스공사, 1.4조원)
	감소요인	원전건설 투자 증가(한국수력원자력(주) △0.8조원)
경영효율화	증가요인	석탄발전상한제 유보 등 (한국전력공사, 3조원)
	감소요인	배당절감액 목표 제외(LH, △1.7조원)
수익확대	증가요인	KTX 경부선 증편(한국철도공사 0.1조원), 해외 자원개발 투자회수 확대(한국가스공사 218억원)
	감소요인	석탄발전기 예비력 정산금 축소(한국중부발전, △16억원)
자본확충	증가요인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반영(한국남동발전, 0.5조원)
	감소요인	토지자산 재평가 계획 철회(한국지역난방공사, △0.16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3~'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3.9.1. p.4 및 부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석탄발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이를 유보함으로써 석탄발전 비중을 늘려 단위당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음



## 재무위험기관별 2023년 수정 재정건전화계획 현황

-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기존 계획(2022)에 비해 2023년 감축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함
  - 재무위험기관별 재정건전화 계획은 2022년 수립한 계획과 2023년 재무 개선을 위해 추가 노력분을 반영하여 수정한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3년 수정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2022년 개선실적과 2023-2026년 추가 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한 재무개선 계획이 기존 2조 950억원에서 2023년 5,252억원으로 변경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한 감축분이 기존 9조 452억원에서 7조 8,504억원으로 총 1조 1,948억원 줄어들었음
    - 이는 22-26 재정건전화 계획 과정에서 배당성향을 40%에서 20%로 조정하면서 1조 6,767억원의 재정절감계획을 수립했지만 2023년 수정계획에서는 이러한 조정 과정이 자구노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해당 감축분이 제외된 것이 원인으로 해석됨
  -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 사업조정을 통한 재무개선 계획이 기존 4,075억원에서 2023년 △570억원으로 변경되어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한 감축분이 총 4,386억원 줄어들었음
    - 이는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 이행과 관련, 원전분야 투자가 당초 대비 증가함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한 감축분이 줄어든 것으로 보임

### 재무위험기관별 재정건전화계획 및 2023년 수정계획(2022-2026년 합계)

(단위: 억원)

기관	구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한국전력공사	기존 계획(A)	15,447	24,765	22,321	9,561	70,407	142,501
	수정 계획(B)	15,742	25,618	59,291	10,387	70,407	181,445
	추가 노력(B-A)	295	853	36,970	826	-	38,944
한국가스공사	기존 계획(A)	44,270	8,245	25,155	53,994	13,000	144,664
	수정 계획(B)	49,817	28,545	12,559	56,545	6,412	153,878
	추가 노력(B-A)	5,547	20,300	<b>△12,596</b>	2,551	<b>△6,588</b>	9,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계획(A)	5,198	64,304	20,950	-	-	90,452
	수정 계획(B)	7,770	65,482	5,252	-	-	78,504
	추가 노력(B-A)	2,572	1,178	<b>△15,698</b>	-	-	<b>△11,948</b>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존 계획(A)	3,107	-	778	-	6,002	9,887
	수정 계획(B)	2,853	66	147	-	7,612	10,678
	추가 노력(B-A)	<b>△254</b>	66	<b>△631</b>	-	1,610	791
한국석유공사	기존 계획(A)	-	-	1,003	-	-	1,003
	수정 계획(B)	826	-	1,709	-	-	2,535
	추가 노력(B-A)	826	-	706	-	-	1,532

기 관	구 분	자산매각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수익확대	자본확충	합계
한국남동발전	기존 계획(A)	1,963	2,605	355	163	0	5,086
	수정 계획(B)	2,787	3,539	696	265	5,000	12,287
	추가 노력(B-A)	824	934	341	102	5,000	7,201
한국남부발전	기존 계획(A)	1,900	4,892	72	18.6	-	6,882.6
	수정 계획(B)	2,371.2	7,408	918.6	35.4	-	10,733.2
	추가 노력(B-A)	<b>471.2</b>	<b>2,516</b>	<b>846.6</b>	<b>16.8</b>	-	<b>3,850.6</b>
한국동서발전	기존 계획(A)	1,860	5,031	235	-	-	7,126
	수정 계획(B)	2,156	5,908	589	-	-	8,654
	추가 노력(B-A)	296	877	354	-	-	1,528
한국서부발전	기존 계획(A)	3,077	13,183	3,100	672	-	20,032
	수정 계획(B)	3,371.1	14,662	3,364	707	-	22,104.1
	추가 노력(B-A)	294.1	1,479	264	35	-	2,072.1
한국중부발전	기존 계획(A)	2,721	967	1,089	353	3,753	8,883
	수정 계획(B)	2,721	4,239	1,319	337	3,753	12,369
	추가 노력(B-A)	-	3,272	230	<b>△16</b>	-	3,486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존 계획(A)	758.5	4,075	1,187	-	-	6,020.5
	수정 계획(B)	780.15	<b>△570</b>	1,424	-	-	1,634.15
	추가 노력(B-A)	21.65	<b>△4,645</b>	237	-	-	<b>△4,386.35</b>
대한석탄공사	기존 계획(A)	50	979	-	-	-	1,029
	수정 계획(B)	64	2,714	-	-	-	2,778
	추가 노력(B-A)	14	1,735	-	-	-	1,749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존 계획(A)	1,402	1,741	227	-	9,436	12,806
	수정 계획(B)	1,469.8	1,287	227	-	7,881	10,865
	추가 노력(B-A)	67.8	<b>△454</b>	-	-	<b>△1,555</b>	<b>△1,941</b>
한국철도공사	기존 계획(A)	-	2,032	104	1,344	-	3,480
	수정 계획(B)	21,452	3,896	877	2,510	-	28,735
	추가 노력(B-A)	21,452	1,864	773	1,166	-	25,255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이슈

###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발표(2023. 6. 16.)

- 기획재정부는 2023년 6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매년도 경영실적 평가 실시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크게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감사 직무 수행실적평가로 나뉘며, 2022년도 기관평가 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로 총 130개 기관, 감사평가 대상은 63개 기관
  -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
    -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기관별 혁신계획 적절성 등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를 반영, 재무성과 10→20점 확대, 사회적 책임 25→15점(공기업 기준) 축소 등 지표별 배점 변화
- '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탁월(S) 없음, 우수(A) 19개(14.6%), 양호(B) 48개(36.9%), 보통(C) 45개(34.6%), 미흡(D) 14개(10.8%), 아주미흡(E) 4개(3.1%)
  - 우수(A) 이상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 아주미흡(E) 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증가한 4개 기관
    - 2등급 이상 변동한 기관이 2021년 7개(상승 3, 하락 4)에서 2022년 26개(상승 12, 하락 14)로 지표 변화에 따른 등급 분포 변화 수준이 커짐
  - 재무성과 지표비중을 확대한 결과, 재무실적을 개선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공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등급 하락

###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단위: 개)

구 분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합계
기관 평가	공기업	-	5	13	12	5	1	36
	준정부 기관	-	14	35	33	9	3	94
	합계	-	19	48	45	14	4	130
감사평가		-	6	24	26	7	-	63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보도자료

-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기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5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관장 해임 건의 의결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결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임원 및 1~2급 성과급 삭감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
    - ※ 대한석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 임원에게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편람(수정)」 발표(2023. 10. 23.)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0월 23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편람(수정)을 발표
  -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평가기준과 방법을 정한 평가편람을 작성해야 함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하려는 특징
  -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부터 변화된 산업별·기능별·규모별 구분 기준에 따라 평가 유형을 구분하는 체계를 유지
    - 평가유형 구분 체계의 변화로 유형별로 평가단을 구성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
    - 산업별·기능별 유형구분은 평가등급(상대평가등급) 산정에 활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계량지표 중 공기업에 적용되는 재무성과관리 내 영업이익률 지표 및 EBITDA<sup>3)</sup> 대 매출액 비율의 기본특점 차등화에 활용, 사회적책임 지표 가중치를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3)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의미함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대상 유형 구분의 변화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유형 구분			2022년·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유형 구분			
공기업	공기업 I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공기업	SOC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공기업 II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에너지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에너지의 생산·공급 및 자원개발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산업진흥 서비스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 분야 산업진흥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위탁집행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위탁 집행형	SOC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SOC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강소형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가 1조원 미만 이고 정원이 300인 미만인 기관			산업 진흥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특정 산업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국민 복리 증진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준정부기관 중 국민복리증진을 위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

- 평가지표 역시 2022년 경영실적 평가 평가지표 및 지표별 배점 체계 유지
- 2022년 경영실적 평가부터 ‘재물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 확대(공기업 기준: 10점→20점), ‘혁신과 소통’ 항목을 없애고 경영전략에 국민소통 지표 포함,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 항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 확대(공기업 기준: 25점→15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평가 범주 및 지표 배점의 변화

(단위: 점)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		2022년·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지표	
경영관리 (55)	경영전략 (6)	경영관리 (55)	1. 경영전략 (9)
	- 전략기획		- 리더십
	- 경영개선		-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 리더십		- 국민소통
	2. 사회적 가치 구현 (25)		2. 사회적 책임 (15)
	-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 안전 및 재난관리
	- 안전 및 환경		- 친환경·탄소중립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 윤리경영	- 윤리경영		
3. 업무효율 (5)	3. 재무성과관리 (20)		
4. 조직·인사·재무관리 (7)	- 재무예산관리		
- 조직·인사 일반	- 재무예산성과		
- 재무예산 운영·성과	- 효율성 관리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8.5)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4)		
- 보수 및 복리후생	-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일반		
- 총인건비관리	- 노사관계		
- 노사관계			
6. 혁신과 소통 (3.5)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 (7)		
- 혁신노력 및 성과	- 보수 및 복리후생		
- 국민소통	- 총인건비관리		
주요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주요사업 (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
		가점 (5)	공공기관 혁신계획 실행노력과 성과 가점

주: 공기업의 지표 및 가중치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 2022년 8월 18일, 새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개편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대상 변경
  - 발표된 개편방안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상향
  - 이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 공공기관 수 감소
    - '22년 130개 기관(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 '23년 87개 기관(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으로 43개 감소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

(단위: 개)

유형		기관명	
공기업 (32)	SOC (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에너지 (12)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산업진흥·서비스 (12)	강원래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55)	기금관리형 (10)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집행 형 (45)	SOC·안전 (14)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 진흥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민 복지 증진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수정)」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주요 감사결과 발표(2023. 8. 23.)

- 감사원은 2023년 8월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
  -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오류로 10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공공기관 평가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 제기 등에 따라 2021년 4월 감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감사 실시
- 지적 사항은 크게 제도 운영 관련 사항과 평가 실시 관련 사항으로 구분
  - 경영평가 지표설계, 평가위원 선정 등 제도 운영 관련
    - 평가지표가 서로 중복·유사하거나 다른 정부기관의 평가결과를 경영평가에 계량지표로 활용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평가 간 일관성을 저해하고 피평가기관에 부담을 줌

※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되는 4개 지표(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혁신노력 및 성과)를 1개 지표로 통합(경영전략 및 리더십)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 마련하였으며, 고용부 안전활동수준평가의 평가지표와 국정원 정보보안실태 평가지표가 경영평가지표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2년 경영평가편람에는 두 평가를 포함한 6개 정부기관 평가결과를 경영평가에 계량지표화하여 반영하는 내용 포함

- 경영평가 평가위원이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위원 후보자를 검증할 때 과거 임기 중 경제적 대가를 수령한 자를 재위촉 하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하여 운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규정 개선안」 발표(2023.10.5.)
  - 경영평가위원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 금지
  -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 평가위원 후보자 검증자료 허위제출 기관은 차년도 경영평가 시 불이익 부여

- 기관별·지표별 평가등급 부여 등 경영평가 실시 관련

- 경영평가의 검토·확인 의무가 있는 기획재정부가 일부 개별 평가지표의 배점이 평가편람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데 확인·수정하지 않고, 평가단이 오류 수정을 위해 지표 등급을 임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지 않아 일부 기관의 종합상대등급 등이 다르게 결정
  -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획재정부 직원 2명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관련자 과장 1인은 주의를 촉구
- 평가단의 평가 과정시 작성하는 평가표에 등급변경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고 평가 완료 후 이를 관리·보존하지 않아 평가단의 책임성과 평가 과정의 투명성 저해
  - ※ 감사원은 경영평가단이 평가표에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등급 변경 이력과 사유 등을 기록하여 서명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는 방안 마련을 통보함

#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심의권한 약화 우려

- 매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후 정부와 여·야 간 비공식 협의를 통해 예산안 수정내용 결정
  -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기한이 본회의 자동부의(12월 1일)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심사기간 종료 이후 예산안 협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아 심의 투명성 저해

###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국회 예산안 처리 일자

구 분		예결위 상정일자	예결위 의결일자	본회의 의결일자	비 고
19대 국회	2015년도 예산안	2014. 11. 6.	-	2014. 12. 2.	본회의 수정안 처리
	2016년도 예산안	2015. 10. 28.	-	2015. 12. 3.	
20대 국회	2017년도 예산안	2016. 10. 26.	-	2016. 12. 3.	
	2018년도 예산안	2017. 11. 6.	-	2017. 12. 6.	
	2019년도 예산안	2018. 11. 5.	-	2018. 12. 8.	
	2020년도 예산안	2019. 10. 28.	-	2019. 12. 10.	
21대 국회	2021년도 예산안	2020. 11. 4.	-	2020. 12. 2.	
	2022년도 예산안	2021. 11. 5.	-	2021. 12. 3.	
	2023년도 예산안	2022. 11. 7.	-	2022. 12. 24.	
	2024년도 예산안	2023. 11. 3.	-	2023. 12. 21.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특히 정부가 증액동의권을 바탕으로 증액 내역 및 규모 등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결위가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한편, 헌법상 증액동의권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심의 관례상 세부사업 단위를 기준으로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것으로 운영 중
  - 세부사업 기준으로 증액동의제도를 운영할 경우 정부 동의 없이는 총액 변동 없는 예산안 내역 수정도 사실상 불가능
- 예산안 심의의 투명성과 민주성 저하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모색 필요

### 개선과제 ①: 정부의 증액동의권 범위 명확화

-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는데(헌법 §57), 이 경우 '항'이 어느 예산 단위인지 헌법 조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음
  - 현 정부의 증액동의 기준인 세부사업은 「국가재정법」 제21조<sup>1)</sup>에 따른 예산 분류 기준인 장·관·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장 하위의 미시적 분류단위임
- 헌법상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은 국회가 단독으로 예산규모를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헌법에서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정부의 증액동의권 범위에 대한 개선 필요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 장·관·항까지 작성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률상 예산분류체계 및 정부 예산안 형태를 고려할 때 “항”은 프로그램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봄

#### (예시) 2024년도 예산안 중 교육부 소관

장(분야)	050	교육	90,640,236,000,000	원
관(부문)	051	유아및초등교육	73,382,075,000,000	
항(프로그램)	1000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20,724,000,000	
항(프로그램)	1200	학생지원	40,599,000,000	
항(프로그램)	1300	학교교육 지원	49,791,000,000	
항(프로그램)	15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885,891,000,000	
항(프로그램)	1600	지방교육정책 지원	944,458,000,000	
항(프로그램)	1700	국립학교 운영	229,981,000,000	
항(프로그램)	8000	회계간거래	3,210,631,000,000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기금의 경우, 헌법 제정 당시에는 기금의 존재가 없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 증액동의사항을 별도로 명시하였는데, 「국가재정법」 상 기금운용계획의 항목에 대해 달리 해석하고 있어 법체계 내 일관성이 낮은 측면
  - 제69조(증액동의)<sup>2)</sup>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은 '세부사업'으로 해석
  -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sup>3)</sup>에서의 기금지출계획의 '주요항목'은 '프로그램'으로 해석
- 따라서 입법과목인 프로그램(「국가재정법」상 “항”)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도 세부사업 간 증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상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검토 가능

1)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2) 「국가재정법」 제69조(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개선과제 ②: 충분한 예산안 심사기한 확보

- 현행 예산안 심사제도 및 국회 운영 관례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준수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에는 물리적·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 현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 및 결산 심사가 정기회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의 추가적 확보가 어려움
  - 예산안 제출 이전 국회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미리 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정부 예산안 제출(현행 회계연도 개시 100일 전) 이전부터 부처별 예산요구서 등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국회가 제출받아 사전에 예산안 검토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가능
  - 중앙관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를 국회도 제출받음으로써 자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에서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참고로, 프랑스, 캐나다 등은 예산안 편성과정에 의회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음
    - 프랑스는 6월까지 정부가 공공재정의 다년간 전략 및 예산 기본방향 등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7월 중 공개회의에서 공공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논의기회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캐나다는 예산안 제출 4개월 전 하원 공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

의회가 예산안 편성과정에 관여 또는 의견 개진 절차를 두고 있는 국가 사례

구분	주요 내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공공재정의 다년 간 전략, 다음연도의 예산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경제 및 공공재정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6월까지 의회에 제출</li> <li>- (의회) 하원과 상원의 재정경제위원회는 매년 7월 10일 이전에 해당 보고서에 대한 질문서를 정부에 송부(「국가재정조직법」§49) → 정부는 10월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서 제출</li> <li>- (의회) 7월 중 공개회의에서 공공재정정책 방향에 관하여 토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토론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법안에 반영될 미션, 주요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의회는 토론회를 통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 간접적으로 의견 제시</li> <li>• 정부는 EU 책무와 관련된 프랑스 경제·예산의 주요 정책 방향, 국가재원 및 기능별 국가 부담에 대한 중기적 평가, 다음연도 예산법안에 반영될 정책목표·프로그램 및 성과지표 등 공공예산정책 방향을 소개</li> </ul> </li> <li>- (정부) 10월 초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1월부터 회계연도 개시)</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년부터 관행적으로 정부가 매년 10월 중순에 하원 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며, 공청회 후 재정위원회는 예산안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토론을 거쳐 정부에 이송</li> <li>- 정부는 의회에 예산안을 2월 초에 제출(4월부터 회계연도 개시)</li> </ul>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향후 3년 간 재정운영 방침과 5년 간 경제·재정전망, 재정전력(前歷) 및 예산우선순위 등을 담은 '예산정책서(Budget Policy Statement)'를 매년 3월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재정지출위원회는 이를 심의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li> <li>- 이후 정부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7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예산정책서와 재정지출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7월부터 회계연도 개시)</li> </ul>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매년 4월 15일까지 거시경제전망, 중장기 재정방향, 주요 정책분야별 개선사항, 세법개정안 등을 포함하는 '춘계재정정책안(Spring Fiscal Policy Bill)'을 의회에 제출</li> <li>- 춘계재정정책안이 제출되면 의회의 재정위원회는 해당 춘계재정정책안과 각 정당들의 대안, 각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서 재정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토론을 거쳐 6월에 의결</li> <li>- 정부는 의회에 예산안을 9월 20일까지 제출(1월부터 회계연도 개시)</li> </ul>

자료: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국회예산정책처, 2020.6.),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김춘순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저, 2018.5.) 및 <https://www.legifrance.gouv.f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아울러 충분한 심사기한 확보를 위해서는 결산 심사 및 국정감사 조기 실시를 위한 국회 운영일정 수립 및 관례화 필요
  -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회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sup>4)</sup> 실제 정기회 전에 실시된 사례는 없음
  - 결산도 정기회 이전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sup>5)</sup>되어 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심사기한이 도과되고 있어 정부 결산안 조기 제출 등 제도개선 방안 논의 중<sup>6)</sup>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최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의안번호 2117117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최근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 일정

구 분		예결위 상정일자	예결위 의결일자	본회의 의결일자	정기회 개회일자
20대 국회	2015회계연도 결산	2016. 7. 12.	2016. 9. 1.	2016. 9. 2.	2016. 9. 1.
	2016회계연도 결산	2017. 8. 21.	2017. 12. 5.	2017. 12. 6.	2017. 9. 1.
	2017회계연도 결산	2018. 8. 21.	2018. 12. 7.	2018. 12. 8.	2018. 9. 1.
	2018회계연도 결산	2019. 8. 26.	2019. 10. 22.	2019. 10. 31.	2019. 9. 2.
21대 국회	2019회계연도 결산	2020. 8. 24.	2020. 11. 12.	2020. 11. 19.	2020. 9. 1.
	2020회계연도 결산	2021. 9. 6.	2021. 12. 2.	2021. 12. 2.	2021. 9. 1.
	2021회계연도 결산	2022. 8. 29.	2022. 11. 7.	2022. 11. 10.	2022. 9. 1.
	2022회계연도 결산	2023. 8. 30.	2023. 12. 20.	2023. 12. 20.	2023. 9. 1.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해외재정동향

---

- ▶ 미국, 2024회계연도 잠정예산 발효
-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 일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 미국, 2024회계연도 잠정예산 발효

미국 의회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잠정예산 결의안에 합의(1차 2023.09.30. 2차 2023.11.15.) 하였으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잠정예산안에 서명하여 잠정예산이 발효됨

- 미국 의회는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시적인 조치로 '잠정예산 결의안 (continuing resolution)'을 의결
  - 만약 미국 의회가 잠정예산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거나 결의안의 효력기간 만료 또는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연방정부 폐쇄사태(government shutdown) 발생
    - 연방정부 폐쇄 발생시 해당 기간 동안 국방, 인명의 안전이나 재산보호에 즉각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이 무보수 휴가 상태로 들어감

### [참고] 미국의 잠정예산제도

- 의회에서 매년 회계연도 시작 시점인 10월 1일전까지 예산안 통과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필수불가결한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정예산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의결
  - 잠정예산은 전체 세출법안 합의시까지 전년도 또는 대통령 예산안의 일률적인 비율에 기반하여 전년도 세출 수준의 자금지원을 지속하도록 의회결의를 통해 결정됨
    - 신규사업은 금지하고 기 계속 중인 사업은 새 회계연도에 축소될 계획이 없는 한 전년도 수준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
    - 잠정예산 결의안은 형식상 상하원의 공동결의안(joint resolution)으로 처리되어 법안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확보
    - 회계연도 개시일이 10월 1일로 개정된 1977회계연도부터 3회계연도(1989년, 1995년, 1997년)만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잠정예산 결의안은 관행으로 정착
- 잠정 예산 결의안의 내용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량지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올해는 세출위원회별로 만료 기한이 상이한 것이 특징임
    - 향후 12개 세출위원회별로 12개 세출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중 4개 법안은 2024년 1월 19일까지, 나머지 8개 법안은 2024년 2월 2일의 기한까지 논의하도록 하고, 부처 별로 기한 내 현 수준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 정부폐쇄의 일시적 회피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

- 잠정 예산 발효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산 결의 과정에 따라 정부 폐쇄 발생 가능
  - 농업 등 4개 위원회(기한 1.19일)의 경우 상원 또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등 비교적 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국토 안보 등 8개 위원회(기한 2.2일)의 경우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지원안 등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sup>1)</sup>
  - 2024년 1월 19일 이전 본예산 또는 추가 잠정예산 결의안 통과에 실패할 경우 1월 20일 부터 부분적 정부 폐쇄 발생 가능
- 미국의 재정건전성 약화와 더불어 예산안 합의 처리 여부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미 부채한도 협상<sup>2)</sup> 및 예산안 합의 절차 관련 불확실성에 기인하여 주요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바 있음
    - 2023년 8월 1일 국제 신용평가사 Fitch사는 재정악화 및 국가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체계 악화 등의 이유로 미국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
    - 2023년 11월 10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또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Aaa안정적 → Aaa부정적) 조정

예산분석총괄과 강지혜 예산분석관(02-6788-4626)

1) 국제금융센터, 「미국, 2차 임시 예산안 통과로 정부 섯다운 재모면」, 2023.11.16

2) 2023.1.19.일 미 정부부채가 법적 한도(31.38조 달러)에 도달하면서 부채한도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며, 채무불이행 예상 시점(6월 5일) 직전인 2023년 6월 3일 「2023 재정책임법」이 통과되면서 2025년 1월 1일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정부 예산은 2024회계연도에는 非 국방 분야 재정지출 동결 등 제한 조항이 적용된 바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 IMF는 2023년 10월 10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 IMF는 세계경제가 2023년에는 3.0%(‘23.7. 전망치 유지), 2024년에는 2.9%(‘23.7. 대비 0.1%p 하향)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종식에 따라 프랑스 및 스페인 등 서비스 부문의 수요가 증가한 것에 비해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 중국과 독일은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세 둔화
  - 선진국의 경우 유로존의 성장이 예상보다 약한 가운데 2022년 2.6%에서 2023년 1.5%, 그리고 2024년 1.4%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개발도상국의 경우 2022년 4.1%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4.0%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며, 2024년에는 특히 중국의 부동산 부문 위기를 반영하여 2023년 7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
  - 다만, 2023·2024년의 예상 세계성장률은 과거 20년간(‘00년~’19년)의 연평균 세계성장률인 3.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3년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음
    - ※ IMF는 매년 4월·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을 발표
- IMF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23년 1.4%(‘23.7. 과 동일), 2024년 2.2%(‘23.7. 대비 0.2%p 하향)로 전망

### 2023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폭

(단위: %p)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선진국	세계
+0.3	△0.2	△0.2	+0.6	+0.2	+0.1	△0.4	-	-	-

자료: 기획재정부

### 국가 그룹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선진국은 1.5%(‘23.7.과 동일)로, 신흥국은 4.0%(‘23.7.과 동일)로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 조정
  - (선진국) 미국은 기업투자의 증가와 탄력적 소비 성장, 프랑스는 산업생산의 증가, 일본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 급증 등으로 성장률 상향, 유로는 금리변화에 민감한 산업의 약화에 따른 성장률 하향



※ (美) 2.1(+0.3%p), (유로존) 0.7(△0.2%p), (獨) △0.5(△0.2%p), (佛) 1.0(△0.2), (日) 2.0(+0.6%p), (英) 0.5(+0.1%p)

- (신흥국)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저조한 투자로 인해 하향, 인도는 4월과 6월 사이의 소비증가로 인한 상향, 러시아는 투자증가 및 소비회복세로 상향, 사우디는 OPEC+3)의 감산결정을 반영하여 하향

※ (中) 5.0(△0.2%p), (印) 6.3(+0.2%p), (러) 2.2(+0.7%p), (멕시코) 3.2(+0.6%p), (사우디) 0.8(△1.1%p)

IMF 세계경제전망(WEO)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경제성장률	2022년	2023년			2024년		
		'23.7. 전망(A)	'23.10. 전망(B)	조정폭 (B-A)	'23.7. 전망(C)	'23.10. 전망(D)	조정폭 (D-C)
세계	3.5	3.0	3.0	-	3.0	2.9	△0.1
선진국	2.6	1.5	1.5	-	1.4	1.4	-
-미국	2.1	1.8	2.1	+0.3	1.0	1.5	+0.5
-유로존	3.3	0.9	0.7	△0.2	1.5	1.2	△0.3
독일	1.8	△0.3	△0.5	△0.2	1.3	0.9	△0.4
프랑스	2.5	0.8	1.0	+0.2	1.3	1.3	-
이탈리아	3.7	1.1	0.7	△0.4	0.9	0.7	△0.2
스페인	5.8	2.5	2.5	-	2.0	1.7	△0.3
-일본	1.0	1.4	2.0	+0.6	1.0	1.0	-
-영국	4.1	0.4	0.5	+0.1	1.0	0.6	△0.4
-캐나다	3.4	1.7	1.3	△0.4	1.4	1.6	+0.2
-한국	2.6	1.4	1.4	-	2.4	2.2	△0.2
신흥개도국	4.1	4.0	4.0	-	4.1	4.0	△0.1
-중국	3.0	5.2	5.0	△0.2	4.5	4.2	△0.3
-인도	7.2	6.1	6.3	+0.2	6.3	6.3	-
-러시아	△2.1	1.5	2.2	+0.7	1.3	1.1	△0.2
-멕시코	3.9	2.6	3.2	+0.6	1.5	2.1	+0.6
-남아공	1.9	0.3	0.9	+0.6	1.7	1.8	+0.1

자료: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nflation Peaking amid Low Growth), 2023.4.

- (인플레이션 전망) 세계 인플레이션은 2022년 8.7%에서 2023년 6.9%(‘23.7. 대비 0.1%p 상향), 2024년 5.8%(‘23.7. 대비 0.6%p 상향)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선진국은 2023년 5.2%, 신흥국은 6.1%로 전망

3) OPEC+란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을 아우르는 주요 산유국 협의체를 의미

-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안정되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 소요 예정이며, 2024년까지 연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8%(23.7.대비 0.6%p 상향)이며, 근원물가상승률은 5.3%(23.7.대비 0.6%p 상향)으로 예측
- (전망의 변동요인) 낮은 성장률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나 2022년 10월 전망 이후 부정적인 위험은 완화됨
  - (상방요인) 노동시장 상황의 완화와 가계 구매력 회복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하락, 코로나 팬데믹 이전 소비추세와 민간투자의 회복, 인공지능의 발전, 녹색기술의 진보 등 빠른 내수시장 회복, 고용률 증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통화 긴축 필요성 감소 등
  - (하방요인)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 기후와 지정학적 분절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 변동성 증가, 폭염, 가뭄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가격 급등, 지정학적 국가 간 분열에 따른 다자간 협력관계 약화, 식량 및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심리 증가 등

## IMF의 정책권고

-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금리 조절
  - 특히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압박이 글로벌 성장의 하방 위험을 초래하므로 부실 개발자의 퇴출과 주택 구매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 등 중국 중앙정부 측에서의 조치 필요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재정적자 및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국가는 효율적 지출 및 개선된 제도적 재정체계가 필요
-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폭염, 홍수, 산불 등 재난으로 전 세계 주요 작물 공급 부족 현상이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므로, 식품수출금지 조치 해지 및 관련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
- 여성 및 노인의 노동시장 진출 장려,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적극적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부족현상 완화 및 인구고령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해소
-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장범위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강화, 탄소가격 책정 및 보조금을 통한 기술 지원 및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추구 필요, 기후에 취약한 지역으로의 기후 적응 활동 및 인프라 투자 필요
- 다자간 분절화 가능성 완화를 위해 국제협력규칙 기반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규제하기 위한 신뢰 확보 등 다자간 협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일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일본 국회는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육성 등 경제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3.2조엔 규모의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sup>1)</sup>을 확정(2023.11.29.)

-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위한 종합경제대책(2023.11.2.)」을 실천하기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3년 11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정부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확정(2023.11.29.)
  -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위한 종합경제대책」은 ‘지속적인 임금 향상과 활발한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고, 임금 향상에 따른 기업 지원 강화, 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금번 통과된 추경예산 규모는 13조 1,992억엔이며,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8조 8,750억엔을 국채 발행(공채금)으로 조달할 계획
  - 2023회계연도 세출 규모는 당초 114조 3,812억엔에서 127조 5,804억엔으로 증가

##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엔)

구분	부문	2023년 본예산	2023년 추경	증감
세출	일반세출	727,317	847,245	119,928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163,992	171,812	7,820
	국채비	252,503	256,748	4,244
합계		1,143,812	1,275,804	131,992
세입	세수	694,400	696,110	1,710
	기타 수입	93,182	134,714	41,532
	공채금	356,230	444,980	88,750

주: 국채비(國債費)는 국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공채금(公債金)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임

자료: 일본 재무성

1)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이다. 일본의 추가경정예산은 보정예산(補正豫算)의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법」 제29조에 따라 ① 법률상·계약상 의무지출에 부족한 경비보충, ② 예산 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한 긴급경비 지출, ③ 채무부담 행위에 의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 ④ 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편성근거로 하고 있다.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 대응, 기업 및 지역성장 강화, 국내투자 촉진, 인구감소 대응, 국토 강인화 등 5개 부문의 사업으로 구성

- 고물가 대응 부문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국민 사업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코스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사회의 내성(耐性)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사업으로는 중점지원지방교부금(저소득 세대 지원 10,592억엔, 추천사업 5,000억엔), 전기·가스·연료유 가격 변화 완화 조치(7,948억엔), 가정·주택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추진 (2,399억엔) 등이 있음
- 기업 및 지역성장 강화 부문은 중견·중소기업 임금 인상 환경 정비, 인력 부족 대응,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 등을 지속 지원하고, 경제회복 기조에 있는 지방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투자 보조시스템(1,000억엔), 중소·중견기업 대규모 투자 보조금(1,000억엔), 직원 처우 개선(581억엔), 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한 커리어 업 지원 사업(97억엔), 논의 발 전환 사업(750억엔), 농림 수산물·식품 수출 확대(360억엔), 지방 관광 촉진 및 관광산업 재생·고부가가치화(689억엔) 등이 있음
- 국내투자 촉진 부문은 생산성 향상, 공급력 강화를 위한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혁신을 견인하는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반도체 관련 사업에 중점 투자
  - 주요 사업으로는 문샷(Moon Shot)형 연구개발제도(2,144억엔), 특정반도체 기금(첨단 반도체) (6,322억엔), 포스트5G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개발기금(차세대반도체)(6,175억엔), 안정공급 확보 지원 기금(기존 반도체 등) (2,948억엔), 우주전략기금(3,000억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의 추진(581억엔) 등이 있음
- 인구감소 대응 부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변혁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추진 교부금(735억엔), 지역 대중교통 유지·활성화 (279억엔),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공동화(5,163억엔), 마이 넘버 카드 취득 환경 정비 (899억엔), 전자 처방전의 보급 촉진·환경 정비(251억엔) 등이 있음
- 국토 강인화(強靱化) 부문은 방재 및 국방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복구(4,259억엔), 자위대 등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의 적절한 대응 (8,080억엔), 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대책(공공사업 관계비)(13,002억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포괄 지원 교부금(병상 확보 등) (6,143억엔) 등이 있음





##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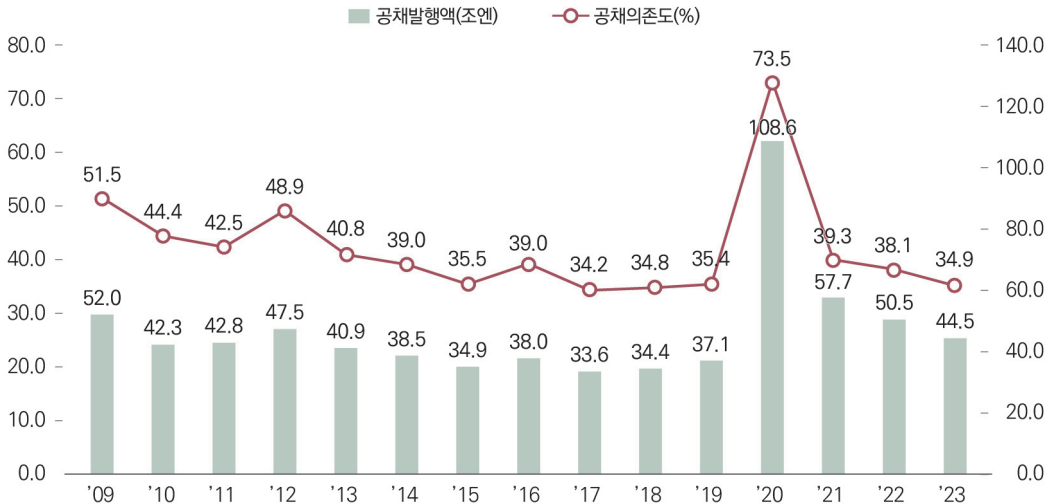
부문	주요 사업
고물가 대응 (27,363억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생활자·사업자 지원 (24,807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점지원지방교부금(저소득 세대 지원 10,592억엔, 추천사업 5,000억엔)</li> <li>전기·가스·연료유 가격 변화 완화 조치(7,948억엔)</li> </ul> </li> <li>에너지 비용 상승에 대한 경제 사회의 내성(耐性) 강화(2,556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주택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추진(2,399억엔)</li> </ul> </li> </ol>
기업 및 지방성장 강화 (13,303억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견·중소기업 임금 인상 환경 정비, 인력 부족 대응,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임금인상 지속지원(5,991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투자 보조시스템(1,000억엔)</li> <li>중소·중견기업 대규모 투자 보조금(1,000억엔)</li> <li>직원 처우 개선(581억엔)</li> </ul> </li> <li>구조적 임금 인상을 위한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 추진(131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스킬링(Reskilling)을 통한 커리어 업 지원 사업(97억엔)</li> </ul> </li> <li>경제회복 기초의 지방에의 파급 및 경제 교류 확대(7,181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논의 발 전환 사업(750억엔)</li> <li>농림 수산물·식품 수출 확대(360억엔)</li> <li>지방 관광 촉진 및 관광산업 재생·교부가가치화(689억엔)</li> </ul> </li> </ol>
국내 투자 촉진 (34,375억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성 향상, 공급력 강화를 위한 국내 투자 촉진(29,308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샷(Moon Shot)형 연구개발제도(2,144억엔)</li> <li>특정반도체 기금(첨단 반도체)(6,322억엔)</li> <li>포스트5G 정보통신 시스템 기반 강화 연구개발기금(차세대반도체)(6,175억엔)</li> <li>안정공급 확보 지원 기금(기존 반도체 등) (2,948억엔)</li> <li>공장·사업소·건축물 등의 에너지 절약 등 (488억엔)</li> <li>생성AI 계산 자원 정비 등(690억엔)</li> <li>GIGA스쿨 구상 추진(단말 갱신 등)(2,716억엔)</li> </ul> </li> <li>혁신을 견인하는 스타트업 등의 지원(5,068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주전략기금(3,000억엔)</li> <li>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의 추진(581억엔)</li> </ul> </li> </ol>
인구 감소 대응 (13,403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추진 교부금(735억엔)</li> <li>지역 대중교통 유지·활성화(279억엔)</li> <li>지자체 정보시스템의 표준화·공통화(5,163억엔)</li> <li>마이 넘버 카드 취득 환경 정비(899억엔)</li> <li>전자 처방전의 보급 촉진·환경 정비(251억엔)</li> <li>치매 관련 시책(409억엔)</li> <li>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가칭) 본격 실시(91억엔)</li> </ul>
국토 강인화 (42,827억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복구(4,259억엔)</li> <li>자위대 등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의 적절한 대응(8,080억엔)</li> <li>방재·감재, 국토 강인화 대책(공공사업 관계비)(13,002억엔)</li> <li>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긴급 포괄 지원 교부금(병상 확보 등) (6,143억엔)</li> <li>아시아(ASEAN 등), 중동, 아프리카 등 글로벌 지원·협력 강화(3,182억엔)</li> <li>우크라이나 및 주변국 지원(1,481억엔)</li> <li>성범죄·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29억엔)</li> </ul>

자료: 일본 재무성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채의존도는 증가

- 일본 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2015.6.)」 및 「신 경제·재정재생계획(2018.6)」 등을 발표하면서 세출개혁 대책을 지속하고 세입재원 중 공채의존도를 낮출려는 계획이었음
  - 2025년까지 기초재정수지(PB) 흑자를 목표로 하여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고령화에 따른 증가 수준으로 제한하고, 비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세출개혁을 지속
    - ※ 공채의존도: 세입재원 중 국채발행(공채금)의 비중
    - ※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 사회보장, 공공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정책적 경비)를 세수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지표
- 공채의존도는 2023년 본예산 기준으로 31.1%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공채를 8.9조엔 추가로 발행하면서 34.9%로 증가
  - 중장기적으로 공채의존도는 2009년 51.5%에서 2019년 35.4%까지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 추세

공채발행액 및 공채의존도 추이



주: 2021년까지는 결산 기준이며, 2022년 및 2023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자료: 일본 재무성

NABO Fiscal Trends & Issues

# 재정동향&이슈

2023년 Vol. 2 통권 제23호

---

발행일	2023년 12월 26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 02-2672-1535

---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805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